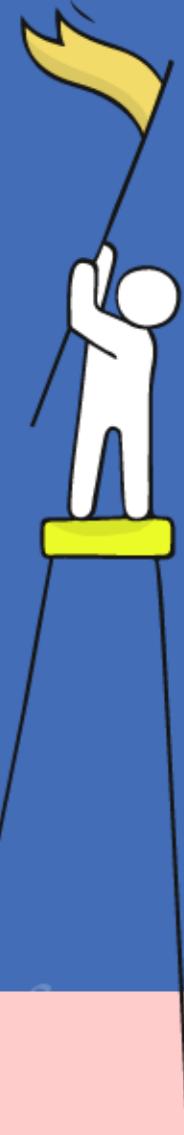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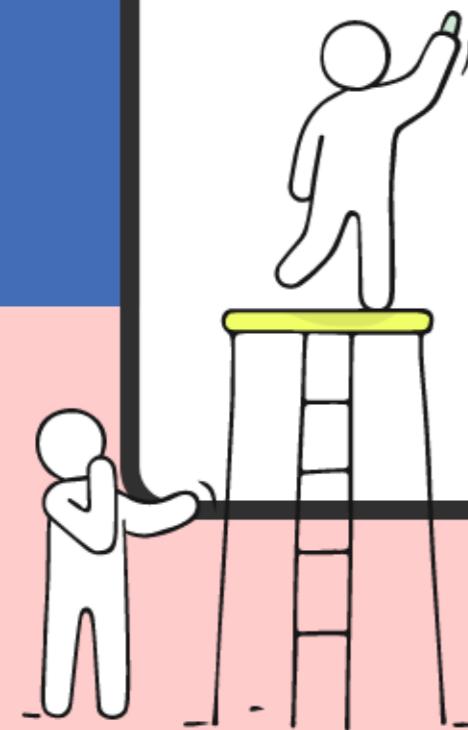


보고서?  
나는 어렵지가 않아 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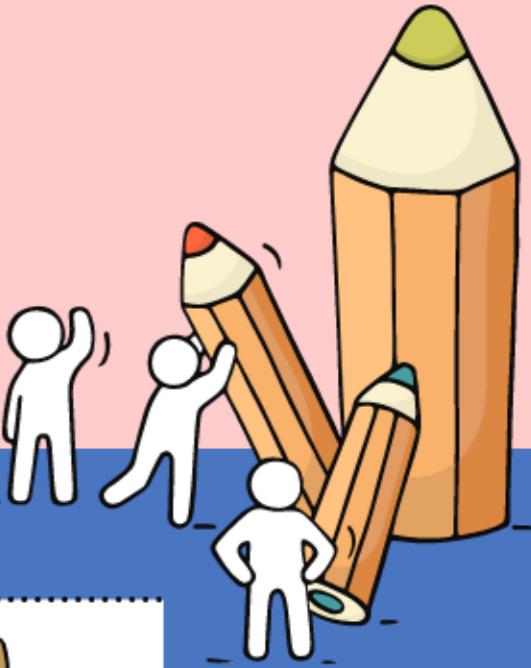
# 보고서?

# 공무원글쓰기아카데미 보고써!

공무원 글쓰기 아카데미 – 기획보고서



# 오늘의 학습 목표



**첫번째,**

## 기획보고서의 정의와 논리구성

기획보고서란 무엇이고, 기획보고서의 논리 구성을 함께 알아봅니다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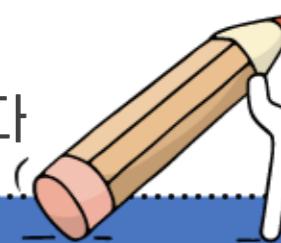
## 기획보고서 형식과 작성법

기획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는지, 작성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세번째,**

## 기획보고서 사례탐구

기획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는지 사례를 탐구하며 함께 살펴봅니다



※ 보고서 사례들은 실제 공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정의 및 논리구성



## 정의

정책 또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기획 및 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

## 논리구성

설득(Why), 왜 이 보고를 하는지 설명 (개요, 추진배경)

설명(How), 어떻게 이 정책 또는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기재(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결정(What), 상급자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요약(기대효과, 조치사항)

## 더 알아가기



### 기획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3.

- 제목은 기획 방향과 핵심 내용을 포괄해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본문은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구성은 미리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결해야 합니다 (문제점 1 : 해결방안 1)



# 형식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심 및 흥미 유발이 가능한 제목</li><li>해결 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목에 기재 (중복 회피)</li></ul>
1.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추진 배경과 별개로 보고서 결론·용건(핵심 메시지)을 두괄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성</li><li>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요약</li></ul>
2.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배경) 추진 계기, 조건, 경과 등의 배경</li><li>(목적) 기획의 필요성, 취지, 이유 등의 목적</li></ul>
3.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과제로 주어진 상황 및 보고자가 개선·변화시켜야 하는 상황</li><li>과제(목표)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드러냄(통계 활용)</li><li>차이로 발생한 부정적 요소 및 차이의 원인</li></ul>
4.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실현가능성, 구체성이 관건)</li></ul>
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과제를 실행한 결과를 예측</li></ul>
6.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예산, 일정, 추진주체, 역할 분담, 규정</li></ul>

※ 본 보고서 유형별 형식은 표준가이드 제공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보고서 작성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례 탐구



근로복지공단, 부산시와 손잡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나서

- 고용노동부 (2015. 11.)

## 근로복지공단 부산시와 손잡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나서 - 11월 11일, 공단-부산시 업무협약 체결 -

- 근로복지공단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11월 11일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키로 하였다.
- 현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3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번 협약은 정부 3.0의 기본 가치인 '소통'과 '협력'에 바탕을 두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 공단은 중소기업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설치비(15억 원 한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설치비 중 기업 부담 분(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참여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육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동으로 2015년 12월 입주기업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 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애로사항인 부지 부족,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1 -

□ 또한, 2016년도부터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등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서 사후 운영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유일의 직장보육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송 차장(☎ 052-0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탐구



근로복지공단, 부산시와 손잡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나서

- 고용노동부 (2015. 11.)

## 근로복지공단 부산시와 손잡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나서 - 11월 11일, 공단-부산시 업무협약 체결 -

- 근로복지공단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 11월 11일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키로 하였다. **(개요)**
- 현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3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황)**
- 이번 협약은 정부 3.0의 기본 가치인 ‘소통’과 ‘협력’에 바탕을 두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추진배경)**
- 공단은 중소기업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설치비(15억 원 한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설치비 중 기업 부담 분(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해결방안)**
-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참여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육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동으로 2015년 12월 입주기업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해결방안)**
-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효과)**
- 공단 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애로사항인 부지 부족,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제점)**

- 또한, 2016년도부터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등 지원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서 사후 운영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유일의 직장보육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추진배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 총괄 차장(☎ 052-0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 답안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 □ 개요

-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 □ 추진배경

- '16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장보육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대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 소재 직장어린이집은 31개소 전체 어린이집의 1.6%에 불과
- 직장어린이집 부지 부족, 설치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부재

### □ 해결방안

- (공단) 중소기업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설치비(15억원 한도, 설치비용의 90%) 지원
- (부산시) 설치비 중 기업 부담분(최대 2억원) 지원 및 각종 행정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참여기업 빨굴 및 입주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지원

### □ 기대효과

-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산으로 해당 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

### □ 조치사항

- 업무협약 체결('15. 11. 11.) 및 입주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15. 12.)

# 사례

1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 추진 배경

- 학교폭력 사안별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회복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제도<sup>\*</sup>가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노정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모든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함(붙임 1)

### □ 추진 경과

- '11년 대구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사건에 의해 촉발된 사회적 논의에 따라 종합대책 마련 및 자치위원회 개최 의무화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11년)  
※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 기재 의무화 제도 시행('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12년)
- 관계부처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17.12.)
  - \* ①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등 학교폭력 제도개선 추진 발표
-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연구 추진('18.2.~'18.7.)
- 학교폭력 제도개선 관련 정책 토론회('18.4.~'18.7.)  
※ 국회 토론회('18.4.4./5.4., 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18.7.12., 1회)
- 관계부처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마련('18.8.)
  - \* ①학교 자체해결 적용 기준 ②가해학생 조치 일부에 한하여 학생부 미기재 방안 등 학교폭력 제도개선 관련 구체적 교육부 안 포함  
※ 교육부 안을 중심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내용 발표
- 학교폭력 관련 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18.9.~'18.11.)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학부모 간담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간담회, 교원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간담회,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과장 회의
-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18.11.)  
※ 주요 정책숙려 대상'에 대한 교육부 안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제도 전반의 개선·보완방안 관련 의견수렴
  - \* ①피해학생·학부모 모두 자치위원회 미개최를 희망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자체해결 권한 부여 ②가해학생 조치 1~3호에 한하여 학생부 미기재

## II 현황 및 문제점

### □ 학교폭력 현황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증가\* 등 학교폭력 피해가 여전히 심각
  - \* '17년 : (1차 전수조사 0.9% / 2차 전수조사 0.8%) → '18년 : (1차 전수조사 1.3% / 2차 표본조사 2.4%)
- 피해유형은 학교급 공통으로 언어폭력(42.5%), 신체폭행(17.1%), 집단따돌림(15.2%), 사이버 괴롭힘(8.2%) 순('18년 2차 실태조사, 불임 2)
- 학교폭력 목격학생 중 34.1%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
  - \*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고 싶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22.0%), '못 본 척 했다'(7.9%), '구경했다'(4.2%) 순

### □ 학교의 교육역량 소진

- 가해자의 반성과 상호 화해, 교육적 해결을 어렵게 하고 학교의 교육역량 소진
  - 교사는 절차 수행자(사안 조사 등) 역할, 교육적 접근 제한
  - '가해학생 조치'에 따른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재심 및 행정 심판 제기 건수 증가 등 가·피해자 간의 갈등 심화

기간	자치위 심의 건수	재심 건수	행정심판 건수
'13학년도	17,749	764	247
'17학년도	31,240	1,868	643
'13~'17 증가율	176%	245%	260%

- 갈등적인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학교·교원의 교육여력 감소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개선요구 지속

- 교원단체 및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요구
  -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기자회견('17.6.22)
    - "학교가 학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부모 간 법적 분쟁으로 가 '대리전'이 되고 있다."(한국교총)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관련한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전교조)

# 사례

## 1

-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호 동의 시 자치위 개최 기한을 연장하고 전문가가 상담·조정하는 방안 추진 예정(19.3~)
- 국회의 사안처리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총 28건 발의 중(19.1 기준)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계류 현황>

- (홍○○ 의원, '17.8.) 현행 자치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축소하고 전문기위원 확대
- (홍○○ 의원, '17.9.) 자치위 폐지 후 시·군·구에 학교폭력에 대한 일차적 해결을 담당하는 기초위원회를 신설
- (안○○ 의원, '18.1.)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시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이○○ 의원, '18.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에 종결 권한 부여
- (곽○○ 의원, '18.10.) 자치위원회 소집 예외 사유 규정(가·피해사실 없음이 명백, 상호화해로 회의소집 요청 취소 철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재심기구 일원화

- 현행 사안 처리 절차가 당사자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다수 언론의 지적

해당 기사(요약)	보도일	매체
• '학폭위' 무조건 열고보자... 화해·사과 없이 신고·처벌만 난무 - 학교폭력 학생을 교육할지, 엄벌할지 사회적 합의 필요	'17.9.16	조선일보
• 누구를 위한 학폭위인가 - 교내 모든 갈등을 처벌로 해결... 가해학생, 피해학생, 교사 모두 개선 요구	'18.7.14	경향신문
• 학교폭력 해결? 학폭위 때문에 되레 아이들이 맴돈다 - 사소한 사건에도 학생부 기재에 따라 재심·행정소송 등 악순환	'18.8.1	한겨레
• 반성 없이 처벌만...'학폭위'에 학교가 맴돈다 - 사소한 말다툼도 학폭위 개최를 통한 차리에 따라 학교 '법정화'	'18.8.30	동아일보

☞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기조를 강화하되,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회복하며  
피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III 정책숙의제 결과

#### □ 참여단 토론(붙임 3)

- (경과) 1차 토론회(18.11.10.) / 2~3차 토론회(18.11.17~18., 1박2일)
- (개요) 숙려 대상을 중심으로 현행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상호 학습·숙의를 통해, 제도 개선 시 예상 부작용 및 보완방안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 도출
- (숙려 대상)
  - **학교자체해결**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학부모 모두 자치위원회 미개최를 희망할 시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학생부 미기재** : 가해학생 조치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완료 시 학생부 미기재

\* 다음의 조건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①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③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④보복행위가 아닐 것

\*\*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 참여단 구성 : 전문가(행정, 법률, 민간, 학계), 학교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 총 30명

전문가 (15명)	기준	학교구성원 (15명)	기준
학계(3명)	조교수 이상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교원 (5명)	학교폭력 업무 3년 이상 담당 교원
행정전문가 (4명)	학교폭력 업무 2년 이상 장학사/장학관	학생 (5명)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민간전문가 (4명)	3년 이상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부모 (5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법률전문가 (4명)	교육청 내외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등		

- (숙려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 교육부 안에 대해 약 60%가 찬성

숙려 대상	찬성	반대	유보	합계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해결 권한 부여	17 (59%)	9 (31%)	3 (10%)	29 (100%)
• 가해학생 조치사항 1.2.3호에 대한 학생부 기재 완화	18 (62%)	9 (31%)	2 (7%)	29 (100%)

- 동시에 은폐·축소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재발방지 등 보완 요구

# 사례

1

## □ 토론 결과

### ○ 총 4개 주장을 담은 권고안 도출

- (현행법 유지형) 학교 대응 역량에 대한 신뢰가 낮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 변경 반대
- (독소조항 개정형)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라는 최초 목적을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소모적인 독소조항 개정 필요

※ 관계회복이 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자치위를 개최해야 하는 점 완화

- (이상형) 피해자, 학교, 가해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종합 계획 마련
- (숙의형) 각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사항 별로 대응방안을 도출·조합하여 종합 시나리오 마련

※ 시나리오 선호도 조사 결과 '숙의형' 시나리오에 대해 참여단 69%가 찬성

구분	계	현행법 유지형	독소조항 개정형	이상형	숙의형
선호도	29* (100%)	4 (14%)	3 (10%)	2 (7%)	<b>20 (69%)</b>

\* 당초 3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표결 당일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

### ○ '숙의형'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붙임 4)

#### -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라는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 표현\*

\* 피해 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일부 표현 (경미한, 자체 종결 등) 수정 및 은폐/축소 염중 처벌, 자체 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 해소 등 피해측 배려 필요

#### -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 폐려다임 전환

※ 행위가 아닌 행위자(가해자, 피해자)에 편중된 법으로 교육적 접근 어려움

- 갈등과 폭력의 차이, 발달단계의 특성, 비대면 소통환경 급증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을 재정의

#### -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학교 사회의 전문성 강화

- 학생, 학부모가 쉽게 인지 가능한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 설문 조사(붙임 5)

### ○ (조사 개요)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18.11.14.~20.)

- 총 2,200명(일반국민 1,000명, 학생·학부모·교원 각 400명) 대상 조사를 통해, 숙려 대상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확인

※ 설문조사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토론과 별개로 진행

### ○ (설문 결과) 학교자체해결제는 찬성 51.4% : 반대 48.6%이며, 가해학생 조치 일부 학생부 미기재는 찬성 40.2% : 반대 59.8%

숙려대상	입장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해결 권한 부여	찬성	44.7%	38.8%	<b>53.6%</b>	<b>78.9%</b>	<b>51.4%</b>
	반대	<b>55.3%</b>	<b>61.2%</b>	46.4%	21.1%	48.6%
• 가해학생 조치사항 1.2.3호에 대한 학생부 기재 완화	찬성	38.5%	24.6%	48.3%	<b>52.0%</b>	40.2%
	반대	<b>61.5%</b>	<b>75.4%</b>	<b>51.7%</b>	48.0%	<b>59.8%</b>

### ○ (주요 반대이유) 학교자체해결제 시 은폐·축소 우려, 가해학생 조치 일부 학생부 기재 완화 시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학교 자체해결제 반대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학교나 가해학생 즉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	67.4%	<b>65.8%</b>	<b>58.6%</b>	<b>52.3%</b>	<b>64.3%</b>
•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	17.3%	15.7%	20.9%	12.3%	17.2%
•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13.6%	14.7%	19.2%	27.0%	15.9%

학생부 미기재 반대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	<b>53.8%</b>	<b>39.2%</b>	<b>56.6%</b>	<b>51.1%</b>	<b>50.5%</b>
• 가해학생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30.0%	<b>39.5%</b>	29.2%	37.7%	33.2%
• 피해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들 것	12.6%	16.5%	13.3%	8.6%	13.0%

☞ 숙려제 참여단 토론 결과를 수용하고, 참여단의 제도 보완 요구사항 및 설문조사의 반대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학교폭력 사안에 엄중대처하면서도, 학생 간 관계회복 및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사례

## 1

### IV 제도개선 방안

- ▣ 참여단 우려사항 및 설문조사의 반대이유 등 국민 의사를 고려하여 아래의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추진
-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강화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 피해학생·학부모 보호 및 지원 강화

#### ①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강화

-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대처 및 자치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추진  
※ 교육청, 현장(교원·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 현행 자치위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 추진  
※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시 외부 전문가 확대 등 자치위 구성 재검토 필요
- 은폐·축소 시도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가중방안 마련
-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②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 【 교육적 해결(학교자체해결제) 도입 】

- 피해학생·학부모 모두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일정 조건(안)\*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① 2주 미만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피해,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③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④ 보복행위가 아닐 것
-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추진 등을 통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강화
- 은폐·축소 방지대책 마련
  - 교육적 해결 후에도 피해자 측에서 다시 자치위 개최 요구 시 자치위 개최
  - 피해자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판단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
  - 교육적 해결(학교자체해결) 즉시 자치위 및 교육청 보고 의무화
  - 은폐·축소 확인 시,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자치위 개최

- 9 -

#####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에 대한 학생부 기재유보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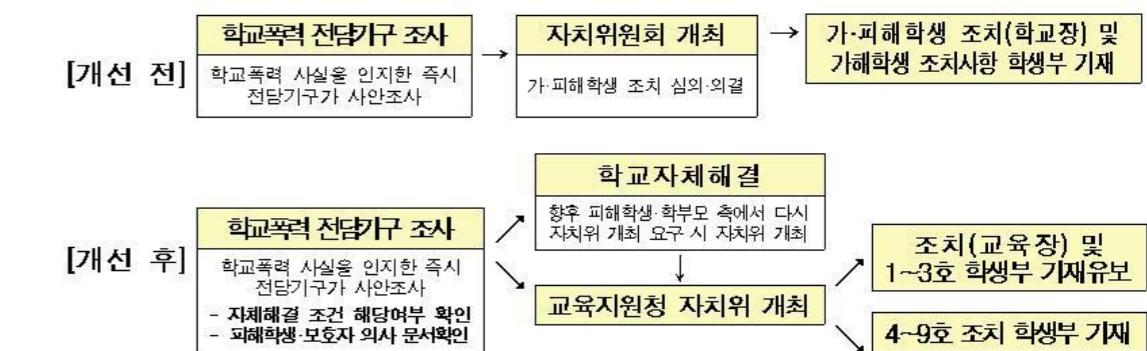
- 가해학생 조치(1~9호)\* 중 1~3호 조치에 한하여, 조치사항 이행을 전제로 학생부 기재유보(붙임 6)

\*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현재 1,2,3,7호 조치는 졸업 즉시 삭제되며, 4,5,6,8호 조치는 학생의 반성·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에 자치위 심의를 거쳐 졸업 즉시 삭제할 수 있음(미삭제 시 졸업 2년 후 삭제)

##### ○ 학교폭력 예방·재발방지 대책 마련

-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이행과 무관하게 학생부 기재
-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인성·감성교육 등) 개발·활용 추진



※ 이원화된 현행 가·피해 학생 재심은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 추진

#### ③ 피해학생·학부모 보호 및 지원 강화

-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추진(~'19.)  
※ 현재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재심청구 시, 전·퇴학조치 이행이 유보되어 피해학생 보호 제한
-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기숙형) 2곳 이상 추가 신설 추진  
※ ('18) 1개소(대전 해맑음 센터) → ('19~) 총 3개소
- 학교폭력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통학형) 설립 및 시범운영

- 10 -

# 사례

## 1

### V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더욱 엄중한 대처
- 교육적 개입 확대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간 관계 회복
- 피해학생·학부모 보호 및 지원 강화

▣ 학교에 대한 국민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배려하며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 □ 향후 추진일정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발표('19.1.30.)
  - ①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②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1~3호) 학생부 기재유보 등 개선방안 확정·추진

\*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배포 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포함
- 학교자체해결제 및 자치위 이관 법률 개정 동시 추진('19.2~)
  - 학교자체해결제는 '19년 1학기 시행, 자치위 이관은 '20년 1학기 시행 목표
  - 자치위 이관의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교원·전문가 대상 집중 의견수렴('19.2~3월)
- 학생부 기재유보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9.)
  - 학교자체해결제 등 법률 개정에 맞추어 진행
-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통학형) 설립 및 시범운영 추진('19.하~)

### 볼임 1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 ○ 학교폭력 발생 시, 자치위원회 의무 개최 및 가·피해학생 조치 결정

현행 학교폭력에 방법에 따른 사안처리 흐름 : 자치위원회 의무 개최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 모든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가해학생 학생부에 기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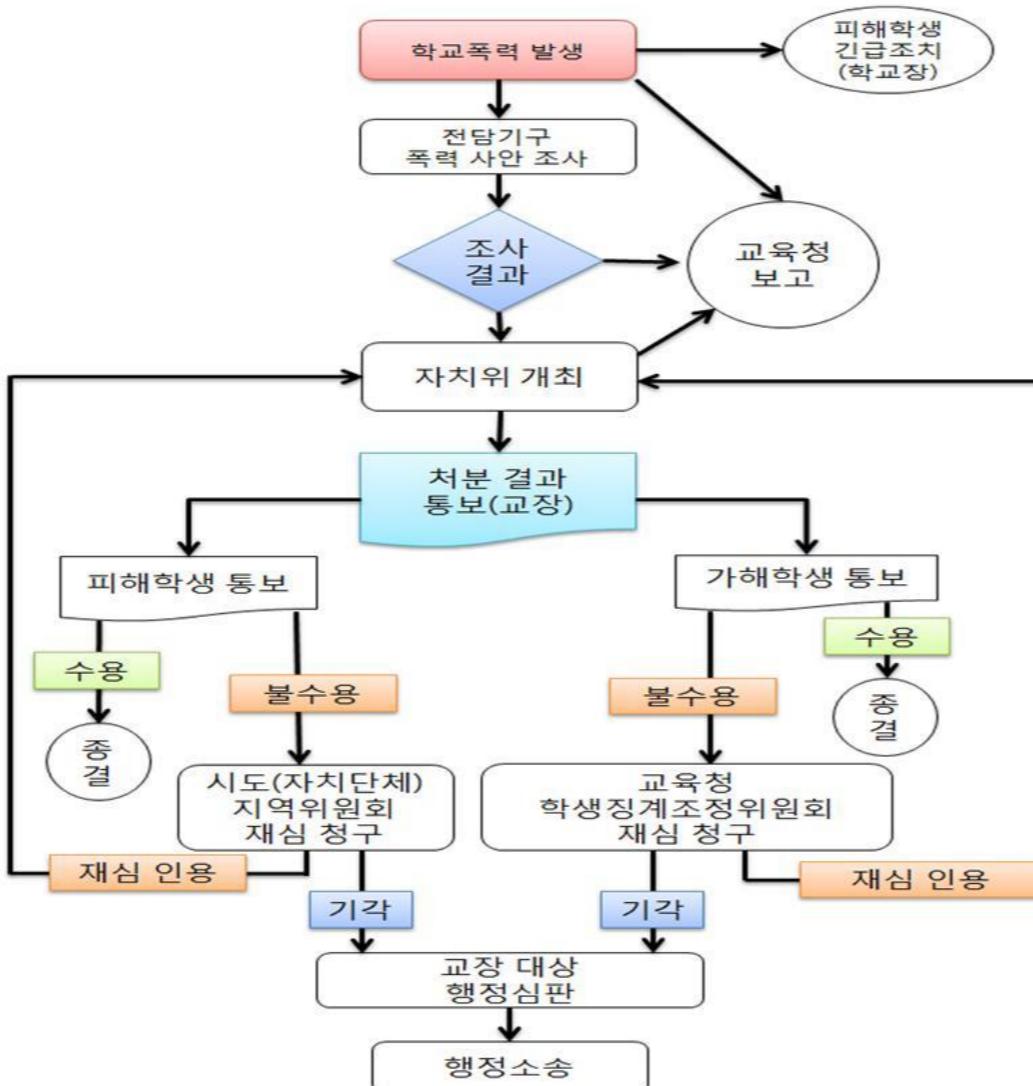
구분	내용	학생부 기재			학생부 삭제 시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적 사항	출결 사항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졸업 즉시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졸업 즉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 즉시
4호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봉사하는 조치)	○		○	졸업 후 2년경과 *
5호	학교内外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	○	○		졸업 후 2년경과
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졸업 후 2년경과
7호	학급교체	○			졸업 즉시
8호	전학	○	○		졸업 후 2년경과
9호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미적용)	○			삭제 규정 없음

\*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에 자치위원회의 거쳐 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 사례

## 1

### ○ 학교폭력 제도개선 추진 전 사안처리 흐름도



### <참고> 제도개선 전 불복절차

#### ○ 가·피해학생 재심기관 이원화

(가해)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피해) 일반자치단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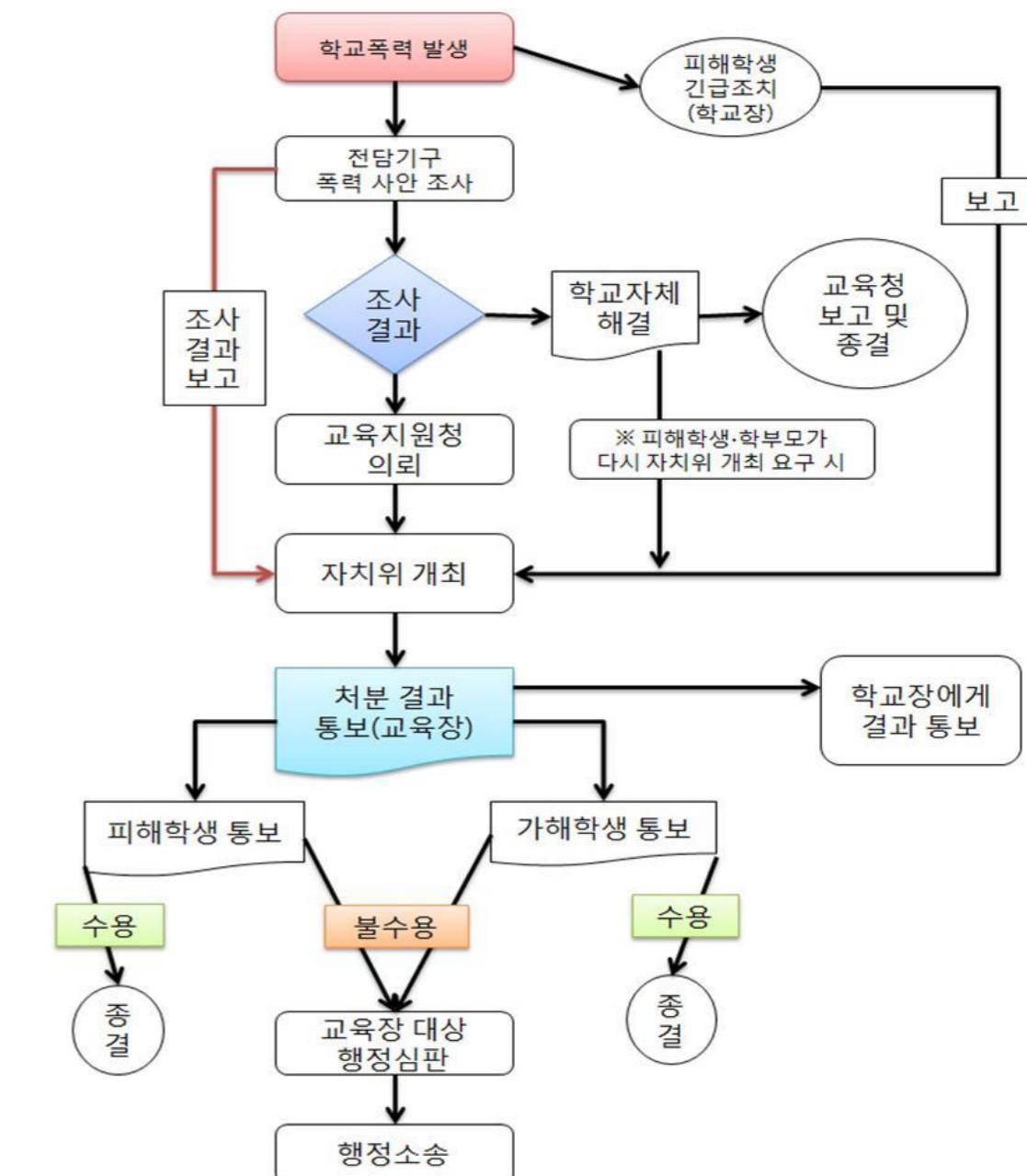
#### ○ 가·피해학생별 재심 - 행정심판 절차

(가해) 전·퇴학(8·9호) 재심(교육청) → 교육청 행심위 / 전·퇴학 외 조치는 재심 없이 행심  
(피해) 재심(자치단체) → 중앙행심위  
※ 가·피해학생 재심기관 이원화에 따라, 행정심판관할도 이원화된 상황

#### ○ 사립학교 불복절차

(가해) 전·퇴학 외 조치는 바로 민사소송 / 전·퇴학(8·9호) 불복절차는 국·공립과 동일  
(피해) 재심(자치단체) → 중앙행심위

### ○ 학교폭력 제도개선 추진 후 사안처리 흐름도



### <참고> 제도개선 후 불복절차

#### ○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시, 재심 폐지

- 가·피해학생 모두 교육청 행심위로 행정심판관할 일원화

-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생까지 모두 교육청 행심위에 행정심판 제기

# 사례

## 1

### 불임 2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개요

- (추진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실시배경) 기존에 연 2회 전수조사 실시하였으나 동일한 설문의 반복 조사 실시가 불성실한 응답 요인으로 작용하고 조사결과 간 차이도 크지 않아 표본조사 도입
- (기간 및 방법) '18. 9. 27.(목) ~ 10. 26.(금) (4주간) 온라인 조사(한국교육개발원 위탁)
- (참여대상) 초4 ~ 고2 재학생 중 약 2.5%(약 9만명) 참여
- (조사내용) '18년 1학기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발생원인 및 대책의 효과성 등
- (기대효과) 기존의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였으며, 표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원인, 대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

#### ① 학교폭력 발생 원인 · 보호 요인 및 대책의 효과성

##### □ 학교폭력 발생 원인

- 학교폭력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단순한 장난으로'(30.8%)가 가장 높았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20.6%), '괴해학생의 말과 행동, 외모가 이상해서'(15.9%), '가해학생이 힘이 세서'(10.4%)등을 원인으로 생각함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이 '단순한 장난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초46.8%<중51.4%<고56.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목격·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개입 및 지원, 학교 규칙 적용, 학교안정성 등 학교 문화<sup>\*</sup>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남
  - \* 학교 문화 : 학교·학급의 학교폭력 예방노력, 학교폭력 개입 및 지원, 학교폭력 지지체계, 학교 규칙 적용, 교사-학생 관계, 학생 간 관계, 학교안전성 등

##### □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성

- (효과적인 대처 방법) 학생들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처 방법'으로 '선생님에게 알린다'(39.9%),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31.7%),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알린다'(11.0%)순으로 응답함

- (효과적인 예방 활동) 학생들은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39.2%)이 학교폭력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며,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22.0%),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3.6%)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으로는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36.8%), '수업 내용에 포함'(21.6%),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20.1%)순으로 나타남
  - (필요한 예방교육 내용)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방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23.7%), '의사소통, 감정조절, 공감 등을 잘하는 방법'(23.4%), '사이버폭력 대처방법'(19.0%)순으로 나타남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보다 '의사소통·감정조절' 등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 학교급별 '의사소통·감정조절, 공감 등을 잘하는 방법' 응답 : (초) 17.0% < (중) 25.3% < (고) 28.3%

#### ② 피해 · 가해 · 목격응답 현황

##### □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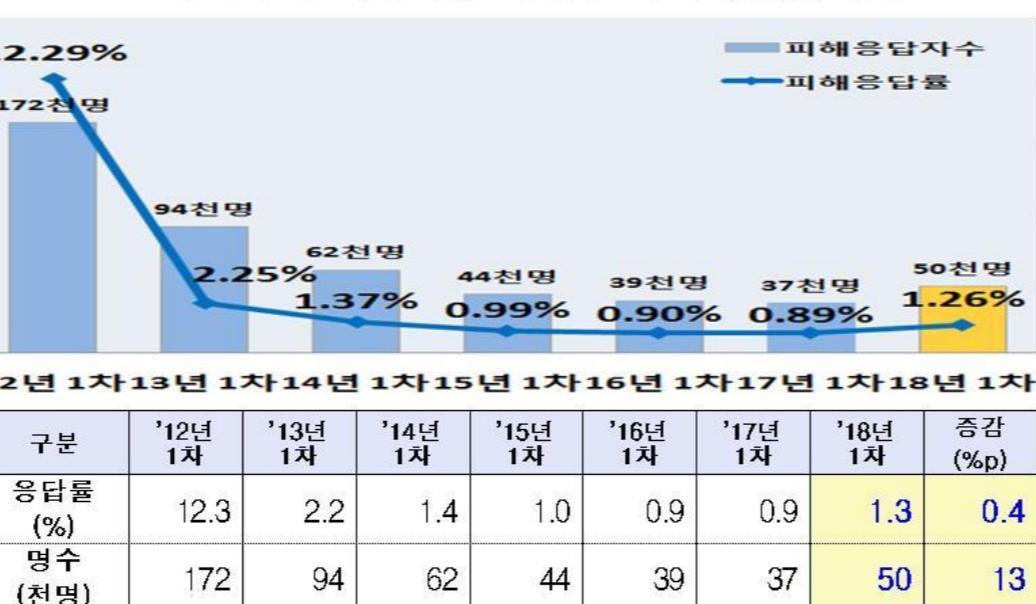
- (피해 경험 여부) 피해응답률<sup>\*</sup>은 2.4%(2,153명)이며,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6%(1,056명), 중학교 2.2%(775명), 고등학교 1.3%(322명)로 나타남
  - \* 피해 응답률: ('17년 2차 전수조사) 0.8%(28천명) / ('18년 1차 전수조사) 1.3%(50천명)
  -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표본조사(약 7,000명 대상) 피해응답률 : ('15년) 4.6% → ('16년) 6.4% → ('17년) 6.5%
  - ※ 피해응답률의 경우 '17년 2차 전수조사 0.8%에서 2차 표본조사 2.4%로 증가했으나, 참여 대상, 통계 특성, 실시 기간 등의 차이로 직접 비교 곤란

##### < 전수조사 - 표본조사 차이점 >

- ① (참여 대상) 초4~고2 재학생의 94.2%(약 360만명)가 참여한 전수조사와 달리, 시·도, 지역규모,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표집한 초4~고2 재학생의 약 2.5%(약 9만명) 대상 조사
- ② (통계 특성)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에 비해 모집단의 경향과 다른 특성을 가진 일부 표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으므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간 단순 비교 곤란
- ③ (실시 기간)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기간이 '17년 4월부터 조사시점('17년 9~10월)까지인 반면, 표본조사는 '18년 1학기부터 조사시점('18년 10월)까지의 경험을 조사

# 사례 1

<표 1>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피해응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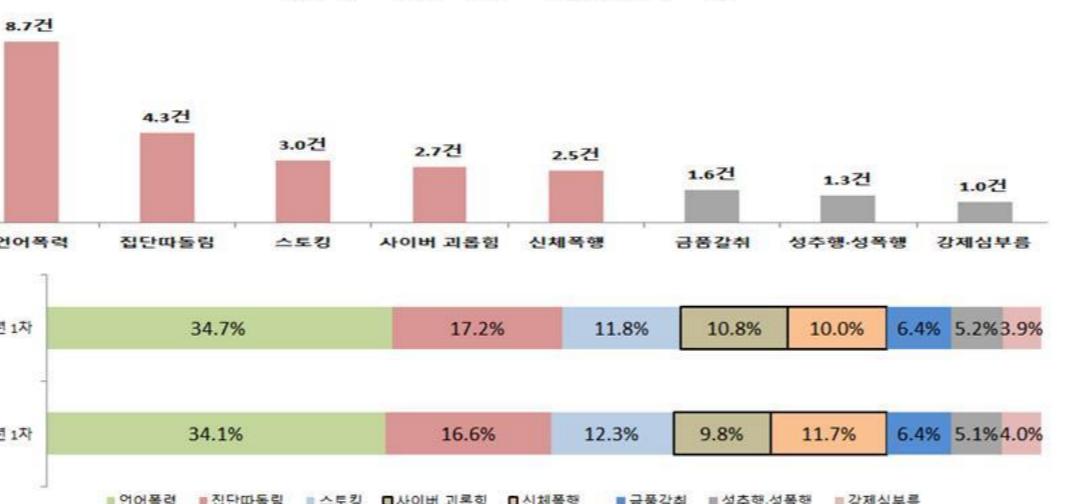


- (피해 유형) 모든 학교급 공통으로 언어폭력(42.5%), 신체폭행(17.1%), 집단따돌림(15.2%), 사이버 괴롭힘(8.2%)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피해 유형(%)

- ('17년 2차): 언어폭력(35.6)>집단따돌림(16.4)>스토킹(11.1)>신체폭행(11.0)
- ('18년 1차): 언어폭력(34.7)>집단따돌림(17.2)>스토킹(11.8)>사이버괴롭힘(10.8)

<표 2> '18년 1차 피해유형별 비율



- (피해 후 경험) '친구들이 나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다'(26.6%),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친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20.7%), '학교에 가기 싫었다'(18.5%) 순으로 응답함

\*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15.1%), '선생님, 가족들이 나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다'(11.9%), '성적이 떨어졌다'(3.7%),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2.7%),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0.8%)로 응답함

- (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학생들은 '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46.5%), '학교 선생님의 도움'(29.9%), '친구, 선배, 후배의 도움'(10.5%) 순으로 응답함

## □ 가해 경험

- (가해 경험 여부) 가해응답률\*은 1.2%(1,061명)이며,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603명), 중학교 1.0%(352명), 고등학교 0.4%(106명)로 나타남

\* 가해응답률: ('17년 2차) 0.3%(11천명), ('18년 1차) 0.3%(13천명)

- (가해 이유)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를 '장난으로'(37.2%)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오해와 갈등으로'(18.1%), '상대학생이 먼저 잘못해서'(17.5%) 순으로 응답함

- (가해 중단 이유) 가해 중단 이유로 '괴롭히는 행동이 나쁜 것임을 알게 돼서'(60.2%)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나서'(12.2%),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서'(10.3%), '피해학생이 싫다고 해서'(7.8%) 순으로 응답함

## □ 목격 경험

- (목격 경험 여부) 목격응답률\*은 7.9%(7,127명)이며,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은 초등학교 9.6%(2,814명), 중학교 7.8%(2,814명), 고등학교 5.9%(1,499명)로 나타남

\* 목격응답률: ('17년 2차) 2.3%(84천명), ('18년 1차) 3.4%(133천명)

# 사례

1

- (목격 시 대처 행동)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알림·도움 비율은 64.9%로, '괴롭히는 학생에게 그만두라고 했다'(23.1%), '괴롭힘을 당한 학생을 위로 해줬다'(21.0%), '선생님, 부모님, 경찰 등에게 알렸다'(20.8%)라고 응답함
- 목격 학생의 방관 비율은 34.1%로,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고 싶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22.0%), '못 본 척 했다'(7.9%), '구경했다'(4.2%) 순으로 응답함
- (적극적 방어자 환경) 목격 학생들은 학교폭력 목격 시 신고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신고 후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37.9%), '신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것'(28.1%), '상담센터(Wee클래스)에서 도와주는 것'(20.6%), '곳곳에 신고함을 설치하는 것'(13.3%) 순으로 응답함

## ③ 향후 계획

-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발표(19.1.30.)
  - 학교폭력 대응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배포 시 표본조사 결과 포함
- 학교폭력 종단연구 추진(19년 기초연구, '20년 연구 실시)
- 표본조사 결과 기반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 및 예방교육 실시(19년)

## 불임 3 정책숙의제 참여단 토론

### □ 진행 개요

- (1차 논의, '18.11.10.) 전체 일정과 숙려 대상에 대한 안내 및 참여자가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의 상호 공유
- (2차 논의, '18.11.17~18.)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 상호 협의점을 탐색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도출

### □ 참여단 구성

- (참여 대상) 학생(중2~고2), 학부모, 교원, 민간 전문가 등 30명
- (구성 방식) 위탁업체에서 전문가·이해관계자 집단별 주요 단체·기관으로부터 참여자를 추천받아 참여자 풀을 구성하고, 참여자 풀 중에서 지역, 소속 등을 고려하여 임의 선발

구분	추천 기준	추천 기관
학교 구성원 (15명)	교원 (5명) 학교폭력 업무 3년 이상 담당 교원	학교 폭력 피해 자가족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대한변호사협회
	학부모 (5명)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학생 (5명)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전문가 (15명)	학계 (3명) 조교수 이상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한국교총 교육청 등
	행정 전문가 (4명) 학교폭력 업무 2년 이상 장학사/장학관	
	민간 전문가 (4명) 3년 이상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 전문가 (4명) 교육청 내외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등	

### □ 참여단 명단(총 30명)

강○○, 권○○,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박○○, 선○○, 송○○, 손○○, 신○○, 오○○,  
염○○, 윤○○, 이○○, 이○○, 이○○, 이○○, 정○○, 정○○,  
조○○, 추○○, 최○○, 최○○, 최○○, 황○○

# 사례

## 1

### □ 토론 결과

#### ○ 숙려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 교육부 안에 대해 약 60%가 찬성

숙려 대상	찬성	반대	유보	합계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해결 권한 부여	17 (59%)	9 (31%)	3 (10%)	29 (100%)
• 가해학생 조치사항 1.2.3호에 대한 학생부 기재 완화	18 (62%)	9 (31%)	2 (7%)	29 (100%)

\* 당초 3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표결 당일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

#### ○ 총 4개 주장을 담은 권고안 도출

- (현행법 유지형) 학교 대응 역량에 대한 신뢰가 낮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 변경 반대
- (독소조항 개정형)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라는 최초 목적을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소모적인 독소조항 개정 필요
  - ※ 관계회복이 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자치위를 개최해야 하는 점 완화
- (이상형) 피해자, 학교, 가해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종합 계획 마련
- (숙의형) 각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사항 별로 대응방안을 도출·조합하여 종합 시나리오 마련

\* 시나리오 선호도 조사 결과 '숙의형' 시나리오에 대해 참여단 69%가 찬성

구분	계	현행법 유지형	독소조항 개정형	이상형	숙의형
선호도	29* (100%)	4 (14%)	3 (10%)	2 (7%)	20 (69%)

\* 당초 3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표결 당일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

#### ○ '숙의형'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라는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 표현
  - \* 피해 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일부 표현 (경미한, 자체 종결 등) 수정 및 은폐·축소 염중 처벌, 자체 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 해소 등 피해측 배려 필요
-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 폐려다임 전환
  - ※ 행위가 아닌 행위자(가해자, 피해자)에 편중된 법으로 교육적 접근 어려움
- 갈등과 폭력의 차이, 발달단계의 특성, 비대면 소통환경 급증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을 재정의
-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학교 사회의 전문성 강화
- 학생, 학부모가 쉽게 인지 가능한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불임 4 참여단 토론 결과 학교폭력 제도 보완 요구 및 반영사항

- (1)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라는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 표현
  -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일부 표현(경미한, 자체 종결 등) 수정 필요
    - ☞ 자체종결 → 자체해결
    - ☞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 →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
  - 은폐·축소 염중 처벌, 자체 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 해소
    - ☞ 은폐·축소 확인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치위 개최, 은폐·축소자 가중 징계
    - ☞ 자체해결 후라도 피해자 측에서 자치위 개최 요구시 개최
    - ☞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 조치 가중 근거 마련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 가해학생 전학 조치시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 2곳 이상 추가 설치 추진
    - ☞ 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 설립
- (2)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 폐려다임 전환
  - 행위가 아닌 행위자(가해자, 피해자)에 편중된 법으로 교육적 접근 어려움
    - ☞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학폭법 개정) 마련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보급·관련 전문가 양성
    - ☞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 포함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 (3) 갈등과 폭력의 차이, 발달단계의 특성, 비대면 소통환경 급증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을 재정의
  - ☞ 중장기적 검토
- (4)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학교 사회의 전문성 강화
  - ☞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화
- (5) 학생·학부모가 쉽게 인지 가능한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 학생·학부모단체 대상 교육·연수의 지속적 추진
  - ☞ 대국민 대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 보급 등

# 사례

## 1

### 불임 5 정책숙련제 설문조사

#### □ 조사 개요

- 총 2,200명 대상(일반국민 1,000명, 학생·학부모·교원 각 400명) 온라인 설문("18.11.14~20.)  
 -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및 교육부 안에 대한 설명문 제시 후,  
 숙려 대상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확인  
 ※ 설문조사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토론과 별개로 진행

<참고> 조사대상 표집 방식

- (선정방식) 설문업체 보유 온라인 패널 중 일정 기준을 고려하여 표집
- (일반국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 시도별·성별·연령별 인구현황 고려
- (학생)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권역별·학교급별 학생 수 고려  
 \*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초등학생 제외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
- (학부모)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대상, 권역별·학교급별 학생 수 고려
- (교원) 초·중·고에 재직 중인 교사 대상, 권역별·학교급별 교원 수 고려

#### □ 설문 문항

Q1. 현재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1-1(2). 찬성(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이유	반대 이유
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①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해야하기 때문이다.
② 자치위원회 진행에 따라 피·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③ 자치위원회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④ 기타 ( )

Q2. 현재는 모든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 시나 일정 기간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 중 경미한 조치에 한하여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2-1(2). 찬성(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성 이유	반대 이유
① 가해학생이 반성한 경우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미기재 시 가해 학생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② 미기재 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②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 이기 때문이다.
③ 가해 학생 반발에 따른 가·피해 학생 간 법적 다툼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피해 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④ 기타 ( )	④ 기타 ( )

#### □ 설문 결과

- (찬·반 입장) 학교 자체해결제는 찬성 51.4% : 반대 48.6%이며, 가해학생 조치 일부 학생부 미기재는 찬성 40.2% : 반대 59.8%

숙려대상	입장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해결 권한 부여	찬성	44.7%	38.8%	53.6%	78.9%	51.4%
	반대	55.3%	61.2%	46.4%	21.1%	48.6%
• 가해학생 조치사항 1.2.3호에 대한 학생부 기재 완화	찬성	38.5%	24.6%	48.3%	52.0%	40.2%
	반대	61.5%	75.4%	51.7%	48.0%	59.8%

- (찬성 이유) 학교 자체해결제는 주로 '교육적 선도·해결 필요성' 이유로 찬성, 학생부 미기재는 주로 '낙인효과 방지' 이유로 찬성

학교 자체해결제 찬성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일부 학교폭력은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해결이 필요	63.8%	38.4%	68.6%	54.7%	58.7%
• 자치위 진행에 따른 피·가해자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방지	24.0%	42.8%	23.3%	23.1%	26.2%
• 자치위 행정업무 감소로 교사 본연의 학생 교육 가능	10.3%	16.1%	7.7%	20.9%	13.5%

학생부 미기재 찬성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기해학생 반성 후에도 낙인효과가 남는 것을 방지	71.3%	61.6%	72.3%	68.2%	69.7%
• 미기재 시 교사가 교육적으로 지도할 가능성이 증가	18.5%	21.3%	15.3%	16.9%	17.7%
• 가해학생 반발에 따른 법적 다툼 발생 완화	9.0%	15.4%	12.1%	11.8%	11.1%

- (반대 이유) 학교 자체해결제는 주로 '은폐·축소 우려' 이유로 반대, 학생부 미기재는 주로 '학교폭력 예방·재발방지 효과 약화' 이유로 반대

학교 자체해결제 반대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학교나 가해학생 측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위험	67.4%	65.8%	58.6%	52.3%	64.3%
• 모든 학교폭력은 경미하지 않은 폭력으로 보고 대처	17.3%	15.7%	20.9%	12.3%	17.2%
• 경미한 학교폭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13.6%	14.7%	19.2%	27.0%	15.9%

학생부 미기재 반대 이유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	53.8%	39.2%	56.6%	51.1%	50.5%
• 가해학생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30.0%	39.5%	29.2%	37.7%	33.2%
• 피해 학생 보호 효과가 줄어들 것	12.6%	16.5%	13.3%	8.6%	13.0%

# 사례

1

## 붙임 6 가해학생 선도 · 교육조치 현황

기간	학교급	합계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학부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1~3호 조치 합계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단위 : 건, (%))									
'13학년도	초	3,108	1,362	492	438	2,292	67	497	87	103	62	0
	중	31,185	8,175	5,144	6,294	19,613	2,096	5,206	2,677	415	1,178	0
	고	9,777	2,406	1,340	1,795	5,541	831	1,817	831	182	457	118
	기타	122	42	19	17	78	3	26	9	2	2	2
	총계	44,192	11,985 (27.1)	6,995 (15.8)	8,544 (19.3)	27,524 (62.3)	2,997 (6.8)	7,546 (17.1)	3,604 (8.2)	702 (1.6)	1,699 (3.8)	120 (0.3)
'14학년도	초	3,570	1,644	527	430	2,601	38	644	109	87	91	0
	중	31,117	8,423	5,275	5,919	19,617	2,110	5,324	2,524	437	1,105	0
	고	10,499	2,633	1,538	1,656	5,827	980	2,062	884	183	461	102
	기타	189	47	32	27	106	3	44	25	2	4	5
	총계	45,376	12,747 (28.1)	7,372 (16.2)	8,032 (17.7)	28,151 (62.0)	3,131 (6.9)	8,074 (17.8)	3,542 (7.8)	709 (1.6)	1,661 (3.7)	108 (0.2)
'15학년도	초	4,445	1,986	653	543	3,182	61	884	126	93	99	0
	중	28,339	8,072	5,135	4,650	17,857	1,716	5,391	2,132	395	848	0
	고	11,422	2,866	1,855	1,687	6,408	878	2,379	926	251	469	111
	기타	188	46	24	32	102	2	44	29	2	8	1
	총계	44,394	12,970 (29.2)	7,667 (17.3)	6,912 (15.6)	27,549 (62.1)	2,657 (6.0)	8,698 (19.6)	3,213 (7.2)	741 (1.7)	1,424 (3.2)	112 (0.3)
'16학년도	초	5,082	2,214	715	620	3,549	59	1,072	168	124	110	0
	중	30,189	8,456	5,854	4,899	19,209	1,795	5,663	2,183	370	969	0
	고	14,351	3,628	2,607	2,034	8,269	995	2,827	1,194	253	658	155
	기타	304	72	42	37	151	16	78	46	4	8	1
	총계	49,933	14,370 (28.8)	9,218 (18.5)	7,590 (15.2)	31,178 (62.4)	2,865 (5.7)	9,640 (19.3)	3,591 (7.2)	751 (1.5)	1,745 (3.5)	163 (0.3)
'17학년도	초	8,458	3,537	1,229	1,223	5,989	121	1,737	307	147	157	0
	중	38,157	10,509	7,794	6,303	24,606	2,389	6,671	2,896	520	1,075	0
	고	16,645	4,106	3,124	2,328	9,558	1,276	3,165	1,498	303	712	133
	기타	339	86	46	46	178	29	90	28	7	7	0
	총계	63,607	18,238 (28.7)	12,193 (19.2)	9,900 (15.6)	40,331 (63.4)	3,815 (6.0)	11,663 (18.3)	4,729 (7.4)	977 (1.5)	1,951 (3.1)	141 (0.2)

※ 조치 병과 가능

## 붙임 7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안]

구분	대책	비고
피해학생을 고려한 표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자체종결 → 학교 자체해결</li> <li>경미한 가해학생조치 → 교내선도형 가해 학생조치 1,2,3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단 권고반영</li> <li>참여단 권고반영</li> </ul>
증대한 학교폭력 엄정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li> <li>외부전문가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비중 1/3 이상으로 원화 추진</li> <li>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 조치기준 근거 마련</li> <li>온폐·축소 시도에 대한 징계 가중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예방법 개정 ('19.상)</li> <li>학교폭력예방법 개정 ('19.상)</li> <li>참여단 권고반영</li> <li>참여단 권고반영</li> </ul>
교육적 해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폐·축소 방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해결 후 피해자 측에서 다시 자치위 개최 요구 시 자치위 개최</li> <li>자체해결 시 자치위·교육청 보고 의무화</li> <li>온폐·축소 확인 시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자치위원회 개최</li> </ul> </li> <li>학교폭력 재발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회 이상 1~3호 조치 받을 시 학생부 기재</li> <li>기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내 개인상담 포함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단 권고반영</li> </ul>
피해학생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학생 전·퇴학 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li> <li>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 2곳 이상 추가 신설 추진</li> <li>통학형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단 권고반영</li> </ul>

# 사례

## 2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2021년 시행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 I 사업 개요

#### ①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 심화  
※ 중국(천인계획, 만인계획), 일본(재홍전략), 독일(흄볼트), 영국(뉴턴펠로십) 등
- 지속적인 생산가능 인구<sup>\*</sup> 감소 및 정출연 책임급(정출연 연구원의 46%) 퇴직 본격화로 향후 국가·산업 R&D 핵심 연구인력 수급 차질 우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비 감소('15년 73.4%→'30년 64.0%, '16.12월 통계청)  
※ 美 대선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의 신진연구자 흡수 심화 예상

#### ② 지원 근거 및 관리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국내 유치 및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신청요건, 지원내역, 종료처리 등의 사항은 시행계획 및 사업공고에 따름

#### ③ 추진경과

-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 BP) 시행('94년)
-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 시행('15년)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sup>†</sup>(Brain Pool<sup>†</sup>, BP<sup>†</sup>) 시행('20년)
-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 및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으로 명칭 변경('21년)
- '18년 대비 '21년 예산 171.5% 증액(11,588백만 원→31,459백만 원)

#### ④ 2021년도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전문기관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한국연구재단
- 지원규모 : 약 330명(신규선발 60명(BP 55명, BP<sup>†</sup> 5명) 내외)
- 사업예산 : 31,459백만 원(사업비 30,124백만 원, 기획평가관리운영비 1,335백만원)

### II 추진실적

#### □ (BP) 해외고급과학자 누적('94~'20년) 2,077명 초빙('20년도 71명 신규유치)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94~'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예산	61,741	3,500	3,150	3,150	3,000	2,838	2,838	2,838	7,874	9,046	99,975
최종과학자선발	1,488	63	63	61	63	54	64	53	97	71	2,077

#### □ (KRF)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누적('15~'20년) 389명 유치('20년도 86명 신규유치)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예산	2,500	5,300	7,121	8,750	12,446	15,449	51,566
유치연구자(신규)	60	50	46	26	121	86	389

#### □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운영 및 제도 개선

- (정책) 지원사업우대제도 개선 등 범부처 협력 내용을 담은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방안('20.11.17. 과기장관회의)’ 발표  
※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주요 내용  
① (전략성 제고)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제도개선으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유치 추진  
② (유입기반) 해외 연구자에게 지원 제도 구인정보 등을 안내하는 범부처 종합포털 마련 등
- (전략적 인재 영입) 인공지능 등 신산업분야 핵심 연구자 영입을 위해 최대 6억원/년을 최장 10년 간 지원하는 Brain Pool<sup>†</sup> 신설('20년~)  
※ '20년,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선도기관 재직자 5명 신규 선발 완료
- (인재매칭) 해외 연구자와 국내 연구기관 간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양방향 매칭플랫폼 구축 완료('20.12월)
- (적응·생활지원) 신규 유치 연구자 현장방문·화상컨설팅(29회) 실시, 연례성과교류회(Global Research Network Seoul, 12/15~16, 온라인) 개최 등 조기적응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화

# 사례 2

## III 한계점

### ① 유치·협력 전략 미흡

- 해외 우수 연구자 DB 부재, 개인 인맥에 의존한 대학 연구실 위주의 해외인력 유치 등 전략적인 해외인력의 유치·활용 체계 부재  
\* '20년도 선정기관 중 대학 87.9%, 출연연 9.6%, 기업 2.5%
- 우리나라와 해외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장기간 국내 정주를 요건으로 하는 기존 지원책으로는 단기(연간 3개월 내) 입국만 가능한 해외 석학과 협력체계 구축에 한계  
※ 수 년간 교류 및 상호 방문연구를 통해 전략적 협업관계가 구축되나, 단기방문은 개별 연구개발 과제에서 충당토록 하여 지금시정 등으로 국내 기관의 주도적인 협업관계 구축 지원에 한계

### ② 유입·정착환경 정비 필요

- 해외 기관·석학과 공동논문 발표 등 해외 연구자와 교류 활성화로 국내 연구성과의 해외 노출도를 높이고 국내 연구환경·취업정보를 외국인 연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산·학·연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자에게 자녀 양육·배우자 취업 등 안정적인 국내 정착 환경 제공 요구

### ③ 해외인재 관련 제도 지원체계 미흡 및 사업관리 강화 요구

- 해외인재 파악·홍보체계, 입국·행정·생활지원, 세제혜택 등 관련제도의 담당기관의 연계 부족 및 전담기관 인력부족으로 효과적인 지원 미흡
- 국내에 유치된 해외 연구자 DB의 산발적 운영, 내국인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체계 부재로 인해 해외인력 실태파악·관리에 어려움
- 중도종료 관련 국회 상임위 지적('19년도 결산, '20년 국감) 등 연구과제 관리(최소 수행기간 도입, 기술유출방지, 사업비 반납 최소화 등) 강화 필요

## IV 2021년도 사업 추진 계획

### 목 표

- ◆ 신산업분야 핵심 연구자 등 해외 우수 연구자 60여명 신규 유치·초빙
- ◆ 해외 연구자가 쉽게 유입·정착하는 환경 마련
- ◆ 전략적 해외 연구자 유치·협력 기반 구축

### 추진 사항

#### ① 전략적 유치기반 마련

- 국제협력지도 구축
- 국내 외국인 연구자 실태조사
-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정착 최종 지원기구로서 LinKo센터 역할 강화

#### ② 유입·정착 지원

- 국내 연구환경 종합 안내 포털 (영문) 구축
- 매칭플랫폼 활성화·고도화
- 외국인 연구자 취업 지원 강화
-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제공

#### ③ 연구자 맞춤형 사업 운영 및 관리강화

- KRF·BP 통합으로 우수 신진연구자 영입 기반 마련
- 선도기관 연구자 초청·협력 유형(3년간 6~12개월) 도입
- BP+ 수시 선발 및 주요 대상자 맞춤형 홍보
- 사유 증빙 불가·12개월 미만의 중도종료 과제 패널티 강화
- 정상종료시 종료평가 가점 및 중도종료에 따른 반납액 최소화 추진

# 사례

## 2

### 1 주요 추진 사항

- [지속 추진사항]**
- (기술분야 우대) 신산업·소부장 기술분야 연구자/연구과제 선정 우대
    - \* 바이오테라피·블록체인·공유경제·인공지능·지능형 반도체·첨단소재·스마트공장·바이오헬스·팹리니·미래자동차·스마트시티·스마트팜·에너지신산업·드론·수소경제·차세대통신·맞춤형헬스케어·가상증강현실·지능형 로봇·혁신신약
  - (기관책임성 강화) 본 사업 인간비를 기관의 정규직 인간비에 추가하는 등 기관 주도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및 연구기관 책임성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인간비 제4호 항목에 따라 유치 연구자에 대해 정규직에도 연구과제 인간비 현금계상 허용 추진
  - (기업참여 강화) 기업연구소장·CTO 대상 사업설명, 산기협·기업마당 등 기업대상 포털 사업홍보, 지속적인 기업 참여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통해 기업참여를 활성화
  - (유치·관리 효율화) 행정·정책 지원, 신규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연구현장 방문·컨설팅 등을 통해 효과적인 해외 연구자 유입·정착 지원

### ① 전략적 유치 기반 마련

- 해외 핵심지역 국제협력지도 구축으로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석학과 협력부터 우수 잠재인력 확보까지 지원 기반 마련·유치대상 풀 확보
  - \* 재외공관·과기협력센터·한국혁신센터(KIC)·출연연 해외조직·재외과학·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를 통한 협력지도 구축 및 국내 산학연 연계 지원
  - \* 해외 석학과 국내 연구기관의 자문·네트워킹을 위한 (가칭)울트라 프로그램(Utra) 추진 검토
- 국내 외국인 연구자 실태조사로 주기적인 유입·정착 정책과제 발굴
-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정착 최종 지원기구로서 LinKo센터 역할 강화
  - \* 국내 유입 과학기술분야 박사급 외국인 연구자(약 5천명으로 추정) 중 6·9%(300~450명 수준)가 본 사업을 통해 유입된 연구자로서 해외 고급인재 유입에 대표적 사업
    - 필요한 조직 및 인력구조, 세부 구축운영방안 마련 및 '22년 예산 반영 ('211분기)
    - 우수 연구자 유입을 촉진하는 비자·세제혜택·복수국적 등 관련 제도 동향파악 및 축적, 연구현장에 안내·적용(전담인력 배치)
    - 해외 Top 연구자, 사업 종료 연구자 등 해외인재 DB 지속적 구축 관리(정기 소식 메일링·SNS 등) 및 타 연구자 DB와 협력체계 구축
    - 종합안내포털 구축운영 등 국내 연구환경 홍보 추진 및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연구자 채용수요 발굴·매칭플랫폼 운영 등 연구자 취업지원 강화

- 5 -

### ② 유입·정착 지원

- (인지도 제고) 해외 연구자가 국내 연구환경 정보(지원사업·우대제도·우수 연구기관·구인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포털(영문) 마련('21.9월)
  - \* 타 시스템(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등)과 연계한 우수 연구기관·성과 안내 및 연구자·연구기관 상호연결, 해외 연구자 간 국내 정보교류·간접경험 지원
- (매칭플랫폼 활성화) 국내 연구실 및 해외 연구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매칭플랫폼 활성화 및 지속적인 애로사항 해결·고도화 추진
- (채용·취업) 다양한 창구를 통한 정기적인 기업의 채용수요 발굴\* 및 취업 희망 외국인 연구자\*\* 연계로 적극적 채용 지원
  - \* (채용수요) 기업부설연(산기협)·패밀리기업(출연연)·유치사업 참여기업 DB, 해외전문인력 유치센터(Contact Korea)의 채용박람회 준비체계 등을 활용한 정기적 채용수요 발굴 추진
  - \*\* (구직수요) 유학생(유학생정보시스템·구직활동신청제도) 및 온라인 채용연결 창구·박사후연구원(출연연) DB를 통한 구직수요 정기 발굴 체계 구축 추진
  - \* 유학생 채용 박람회와 공동 박람회 개최 등 기존 창구를 활용한 산업체 연구자 채용 활성화 추진
- (조기적응) 연구단지 등 연구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추진으로 외국인 연구자와 가족의 조기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 \* 해외 연구자 유치사업 오리엔테이션 등 연구현장 교육수요 파악 및 조기 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제공 추진

#### < 정착지원 서비스 및 사업개선 활동 >

프로그램	세부 지원 내용
입국·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정착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전문상담 및 대응</li> <li>•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제공</li> <li>• 입국 및 정착시 필요한 행정절차 안내</li> <li>• 한국어교육 강화 및 관련 무료 교육기관 안내</li> </ul>
경력개발 지원 (네트워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담회, 성과확산 공유회 등 연구 네트워크 형성 지원</li> <li>• 신규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개최</li> <li>• 온라인 및 오프라인(산업계, 취업박람회 참여 등) 취업지원</li> </ul>
사업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li> <li>• 성과, 해외인재 활용 등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li> <li>• 종료과제에 대한 추적조사 및 DB구축</li> </ul>

- 6 -

# 사례

## 2

### [3] 연구자 맞춤형 사업 운영 및 관리강화

- (우수 신진) KRF와 BP 통합으로 신진연구자 최대 지원액을 상향조정(0.7억원 → 8억원)으로써 높은 대우의 우수 신진연구자를 영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선도기관) 선도기관 연구자 초청·협력시 장기간(3년) 공동연구로 협력체계 구축을 유도하면서도 현실적인 입국기간(3년간 6~12개월)만을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도입
  - \* 중점 기술분야 120개 중 '해외협력 필요 기술분야' 및 전문가가 인정한 해당 기술분야 선도기관과 협력과제에 대해 3년간 6~12개월 선도기관 연구자 유치 지원
- (BP<sup>+</sup>) BP와 동일하게 수시 선발(3·5·7·9월)을 통해 연구기관의 적시 인재영입을 지원하고, 사업 주요 대상자(국내 우수 연구기관·해외 우수 연구자) 맞춤형 홍보로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도모

[해외연구자 유치사업 개선 내용]

<'20년 현행>		<'21년 개선>	
		[폐지]	
KRF(신진) 박사후 5년이내 최대 0.7억원/년 3~5년간 지원	[국내거주 외국인 신진연구자 유형] [해외거주 한인·외국인 신진연구자 유형]	→	Brain Pool (BP, 신진~석학) 최대 3억원/년 박사학위자 또는 해외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기존유형] - KRF와 통합 - 최장 3년간 지원(연장시 최장 5년) [선도기관 협력 유형(신설)] ·선도기관 협력 필요 기술분야 대상 ·선도기관 재직자와 협력 지원 ·3년간 6~12개월 지원
Brain Pool(BP, 중견~석학) 박사후 5년 이상 해외 경력자 또는 해외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최대 3억원/년, 최장 3년 지원	→	Brain Pool Plus(BP <sup>+</sup> ) 박사학위자 또는 해외 산업체 연구개발 5년 이상 경력자 최대 6억원/년, 최장 10년 지원	→
		[폐지]	
		Brain Pool Plus(BP <sup>+</sup> ) 지속 ※ '21년 정부안, 신규과제 5개 반영	

- (관리강화) 국회 상임위('19년도 결산, '20년 국감)에서 중도종료 과제 관리 강화가 지적됨에 따라 패널타인센티브 부여 및 반납금액 최소화 등 노력
  - 중도종료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년 간 연구책임자 해외연구자의 동 사업 신청 제한 및 최소 수행기간(12개월)에 미달된 경우 체재바이사비 미지급, 조기종료·정상 종료자의 경우 종료평가시 가점 부여
  - 과제별 연구개시일에 따른 협약체결·과제비 지급으로 입국포기로 인한 반납액(타 과제선정에 활용 불가) 최소화 및 효율적 예산 활용 추진
  - 모든 과제에 대해 개시 전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화로 기술유출 방지

### 2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과제평가(선정·중간·최종)

#### [1] 신규·재신청 과제 선정평가

- 해외연구자의 역량 및 과제 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의 해외 연구자 지원·활용 계획 평가 강화로 기관의 관리책임 강화
  - 주관기관의 해외연구자 인건비·주거지원·생활지원 체계·연구비 지원 등 지원계획을 선정평가에 강화하여 반영
  - ※ 국적 다양화를 위해 1국(한국 제외)에서 각 선발시기별 총 선정자의 20% 초과 제한 가능
  - ※ 국제 한인 연구네트워크 구축·유치 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한인·교포 최소 선정비율(30%) 적용
  - ※ 선정완료 후 미입국 협약포기자(국내 PI, 해외인재)에 대해 동사업 3년 참여제한 패널티 부과
  - ※ 차라리 정 제18조(수행전념제2항제3호 및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본구축… 등에 따라 해외 연구자가 아닌 국내 연구책임자에게 3회5공을 적용하지 않음

#### [2] 중간평가

- 연도별 연차보고서 등에 해외연구자의 연구성과 및 신진연구자의 성장·발전 등의 점검 내역을 주관기관이 제시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주관기관의 해외인재 활용 책임성 강화
  - ※ 자체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를 강화

#### [3] 조기종료과제의 추진 경과 점검 및 실적평가

- 현장 방문평가 및 실태점검 등을 통해 연구계획대비 달성을 및 유치연구기관의 해외인재 활용실적을 평가
  - ※ 유치연구자의 국내 취업의 경우 사업의 성과 달성을 인정하여 조기종료 처리

#### [4] 최종평가

- 과제 종료에 따른 최종 연구성과 및 향후 활용방안,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실적, 해외 연구자 활용도 등을 중점 평가
- (평가결과의 활용) 과제책임자 및 해외연구자가 향후 동 사업 신청 시, 최종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점수 가감 추진
  - ※ 평가결과 우수자(국내PI·해외연구자)의 경우, 차년도까지 동시사업 신청시 선정평가 기점 부여

# 사례

## 2

### 첨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상세 지원내역

####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 BP<sup>†</sup>)

- **(BP, 지원대상)**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에 공동연구를 위해 초빙되는 해외 우수과학자<sup>\*</sup>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박사학위자(한인은 해외거주자에 한함) 기업부설 연구소는 학위 없이 해외현지 신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가능

#### [BP사업 지원내역]

유형	지원기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유치경비)	
【유형1】 단기 지원	6~12개월 ※ 산업체: 3~12개월 지원 가능 ※ 선도기관과 협력으로 인정된 경우 3년 간 6~12개월 초청 가능	해외 고급 과학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b>(최소 5백만 원/월 ~ 최대 25백만 원/월)</b> ※ 기업 부설 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 지원 ※ 정규직의 경우 '인건비' 외 비록(연구활동 장려금 등)으로 지급 가능	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국내외 여비, 자녀 학비 (누리과정 등) ※ 유형2의 경우, 체재비 (1,200만원/년·인) 제공 가능	최대 5백만원 (전담인력 지원비 포함)
【유형2】 장기 지원	3년 이상 최대 5년(3+2)			

- **(BP<sup>†</sup>, 지원대상)** 정부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려는 신산업분야<sup>\*</sup> 최고급 인재<sup>\*\*</sup>의 추가 인건비체재비 등

\* 8대 선도사업·3대 전략투자·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빅데이터·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팬데믹,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수소경제, 차세대통신, 맞춤형헬스케어, 기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혁신신약

\*\* 해외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박사학위자 또는 학위 없이 해외 현지 신업체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BP<sup>†</sup> 지원내역]

지원 기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최장 10년 (2+3 +3+2)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 기관매칭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월 세·전 세자금 이자 등 최대 1,200만원/년·인 지원	포 닥 등 참여연구자 인건비, 초기 실험실 구축비 등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자녀학비(누리과정, 초·중·고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초·중등교육법」 학교 및 국제학교,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 실비지원), 보험료, 이주경비, 국·내외 출장여비 등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b>최대 총 6억 원/년 지원</b>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대)·6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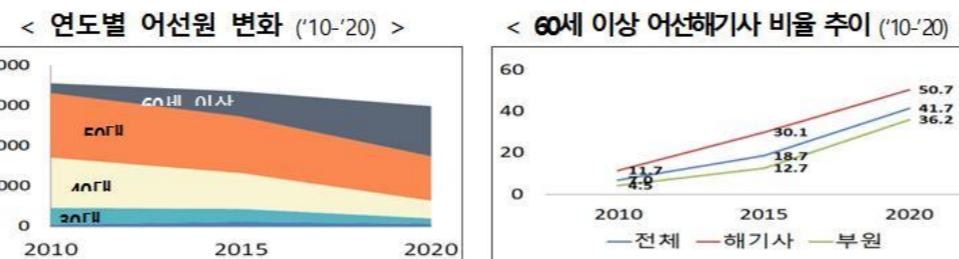
# 사례

## 3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  
- 해양수산부 (2022. 3.)

### I. 현황

- 근해, 원양어업의 어선원은 지난 10년간 ('20) 16% 이상 감소하였으며, 60세 이상 비율은 41.7%로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
  - 전체 어선원수는 ('20) 99,389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근해·원양의 경우\*\*, 어선원수(해기사/부원)는 ('10) 17,831(6,045/11,786) → ('20) 14,975(5,705/9,270)
  - \* 연근해(20t 미만)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 추정 / \*\* 근해(20t 이상), 원양 : 한국선원통계연보
  - 특히, 해기사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5.9%(283명)에 불과해, 향후 국내 어업생산기반 약화 우려(근해·원양)



- 현재와 같은 추세 시, 60대 베이비붐 세대(63년생 이전)가 대량 은퇴\* 하는 변곡점인 '29년에 약 640명의 어선 해기사 부족 예상(근해·원양)
  - \* 해기사 평균연령 : 기관장 62세, 선장 60세 / 해기사 평균 은퇴 시점 : 70세
  -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생산을 위해서는 현 승선 수준에서 매년 50~60명의 해기사 추가 확보 필요



\* 최근 5년간 어선 해기사 감소율, 근해어선 감척 계획, 해기사 은퇴 70세 반영

- 1 -

### II. 문제점

-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원인으로 청년들의 어선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어선원 신규 유입(수산高(70%), 수산大(20%), 연수원(10%)) 규모 지속 감소
  - \* 수산계고(승선7 / 9개교) : 인천·충남·경남·포항·여수·신안 해양과학고, 완도수고 성산고, 울릉고
- 어선원 최대 양성기관인 수산계고 승선학과는 입학생 부족\*, 재학생 중도자퇴, 졸업 후 미승선 등으로 신규 어선원 양성에 어려움
  - \* '22년 승선학과 입학생 : 정원대비 55%(185명/337명) 모집
- 5년만에 수산계고 승선학과 졸업생수 46.8%, 졸업 승선자수 42.5% 감소\*



- \* 승선학과 졸업생수 : ('17) 389명 → ('21) 207명 / 승선자수 : ('17) 106명 → ('21) 61명
  - \*\* 00고 승선학과 학생수 : (1학년) 45명 → (2학년) 32명 → (3학년) 24명
  - 수산계 고교(공립) 관리기능이 교육청 소관으로 수산분야 전문성 확보 및 선사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마련 곤란
    - \* (우리부) 9개 고교에 수산 실습장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매년 13억 지원
  - 승선 실습선의 노후화 등에도 교육청의 해결의지 부족 및 어선 어업 전공교사 부족으로 어업에 대한 꿈과 비전 교육에 한계
    - \* (선사) 연수원 승선실습 학생 선호, 취업 또한 연수원 승선실습 학생을 우선 선발
  - 승선 유인을 위해서는 승선 기피 사유인 근로 환경·조건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단시간 내 해결 곤란
    - 어선 현대화(쉽고, 안전하고, 효율적 작업이 가능한 선박), 근로조건 개선(휴식 시간 보장 등), 기계화(작업강도 완화), 적정량 어획 등 어업 강도 완화 등
- ▣ 해기사 중심의 어선원 양성을 위한 수산계 고교 활성화, 비수산계 출신 학생, 부원 모집 활동 강화 등 단기 가능 대책부터 우선 추진

- 2 -

# 사례

## 3

### III. 해외사례

#### [일본]

- 어선원 감소(16만명, '10년 대비 ▽22.7%) 및 고령화를 겪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선원 비중이 낮고 및 고령화 추세가 느린 상황
  - \* 어선원 중 60대 이상 비율 : 韓 41.7% / 日 22.8%
- 50개 수산·해양계고\*에서 연간 약 3천여 명이 졸업, 120여 명(40%)만 어선에 승선, 청년들의 어선원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와 동일
  - \* 어선해기사양성 : 수산계고교(본과 3년→5급 취득), 필요 시 전공과 2년 추가 이수 시 3급 취득
- 해기사 양성과정 다양화\*, 어선·어구 임대, 생활안정자금 지원, 선사와 연계한 기업실습·현장 체험 교육 강화 등 어선원의 매력화 홍보
  - \* 비수산계 출신, 승선경력 보유 부원 선원 등에 대한 해기사 취득 기회 확대

☞ (시사점) 일반인 해기사 양성 확대, 승선 동기부여를 위한 승선 체험 활성화, 취업·주거 생애 전주기를 책임지는 지원 필요

#### [노르웨이]

- 어선현대화(자동화, 기계화)를 통해 안전성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강도를 낮춰 선원 근로의욕 고취(5,980척, 11,048명)
  - 조업시간\*, 선원임금\*\* 등 근로조건이 우수해 선원들의 만족도 높음
    - \* 조업시간 : 주간조업, 1항차 3일, 평균 조업일 181일
    - \*\* 선원임금 : 전체 평균 임금(약 8천만원)에 비해 어선원 임금(약 1억 5천만원)이 고소득
- ☞ (시사점) 어업 자동화·스마트화 지원을 통한 노동강도 저감 및 국제 기준에 맞춘 근로 여건(임금, 휴식 시간, 복지 공간) 개선 추진 필요

### VI. 추진전략 및 목표

#### 비전

#### 수산후계인력 육성을 통한 안정적 어업기반 마련

#### 목표

- ▶ 수산계고 출신 청년 어선원 육성·배출
  - \* (승선 취업율) '18(21.0)→'19(17.3)→'20(24.9)→'22(25)→'25(40)→'30(50%)
- ▶ 비수산계 어선원 양성·확충(연수원)
  - \* (연간 배출인원) '17(29)→'19(28)→'22(30)→'25(50)→'30(70명)
- ▶ 신규 어선원 일자리 매칭(일자리지원센터, 부원중심)
  - \* (연간 성사건수) '17(276)→'19(168)→'22(200)→'25(250)→'30(300건)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수산계고교 활성화

- ① 신입생 모집활동 강화(우리 부, 교육청, 업계 공동)
- ② 수산계고 인지도 제고, 어선원 국민 인식개선
- ③ 교육장비 확충 및 현대화 등 교육여건 개선

#### 연수원 역할 및 기능 강화

- ① 연수원 선박을 활용한 신입생 유치(중학생 승선체험)
- ② 승선실습 일원화(학교·연수원→연수원)
- ③ 비수산계 어선원 양성과정 확대(오션폴리텍)

#### 교육부·교육청 협력 강화

- ① 마이스터고 확충(현 2개교 → 3~4개교)
- ② 수산계 고교 활성화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③ 정례협의회 운영, 수산계 고교 투자 확충

#### 어선원 모집 및 취업 지원 강화

- ① 찾아가는 어선원 모집 등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 ② 노·사·정 합동 취업박람회 개최
- ③ 청년 어선원 자립 지원 등

# 사례 3

## V. 세부 추진과제

### 1. 수산계고 활성화를 통한 어선 해기사 육성

- ◇ 수산계 고교를 통해 어선어업 필수·핵심 인력인 선장, 기관장은 내국인 해기사로 유지하기 위해 청년 어선 해기사 집중 육성
- ◆ 신입생 확충,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실무중심 교육, 실습 장비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

#### ① 입학 단계

- (전국단위 홍보) 수산계 고교 신입생 및 우수 학생 모집을 위한 노·사·정·학교 협동으로 전국단위의 홍보사업 추진
  - \* 현재는 학교별 홍보활동으로 홍보 콘텐츠 부족, 예산 등의 한계로 홍보에 제한
- (통합홍보) 전체 9개 수산계고가 참여해 수산계고의 매력과 특·장점 **홍보효과**\*가 높은 유튜브, 대형 포털(네이버 등) 및 SNS 등 온라인 홍보 추진
  - \* 완도수고 온라인 홍보 사례 : (전) 정원 72명 중 관내 60명 → (후) 관외 신입생 50% 입학
- ▣ 통합홍보에 필요한 예산(5억원)은 정부(우리 부, 교육청), 선원노조, 선사(원양선사, 대형선망 등) 및 학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참여율 제고
- (인지도제고) 인기 TV방송\*에 수산계고 출신 성공인 및 재학생, 연예인 등 출연을 통해 수산계고 인지도 제고 및 어선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추진
  - \* (TV 방송 예시) : KBS 생생정보통, 도전골든벨, EBS, 채널A 서민갑부 등
  - \*\* (컨텐츠 예시) : -학생의 하루일과 등 학교생활 소개, 성공인 성장스토리 등

□ (신입생 유치에 연수원 실습선 활용) 중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수원 실습선 승선 체험\*을 실시하여 수산계 고교 진학 유도

\* 현재는 선박을 보유한 일부 학교(3개)만 승선 체험을 통해 신입생 유치 활동 중이며, 승선 체험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수산계고에 진학

○ (승선체험) 최신시설을 갖춘 연수원 선박(1,500톤, '18년 건조)을 활용, 전체 수산계 고교 대상 승선 체험 실시(신입생 유치 시기 및 평시에도 적극 활용)

\* 학생, 학부모 등 대상 공동조업, 밤낚시 등 승선 어로 체험으로 유대감 형성(통상 2박 3일)

- 신입생 유치 효과가 뛰어난 승선 체험을 모든 수산계 고교가 공동 참여하거나 개별 방식으로 실시

○ (승선실습 과정 체험) 기존 연수원 승선 실습 교육(3학년 대상, 3개월)과도 연계, 재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참관토록 하는 등 신입생 유치 활동

#### ② 재학 단계

□ (직업경로-career path 교육) 승선학과 졸업 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직업 경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어선원 취업 동기부여

\* 현재는 직업 경로 교육이 단편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동 교육의 필요성을 건의(학생 면담 시)

○ 학생들이 어선원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수립하고 직업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직업진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마련(교육청 협의)

\* 직업의식(일의 정의 및 가치관 등), 직업선택·직업경로(수산 및 어업전문가로서의 성장경로), 수산업의 국제적인 추세 및 역할(선진 수산국의 선진사례 소개) 등

□ (승선 동기부여) 전·현직 승선 취업 선배 등으로부터 어선 해기사 직업의 장점과 매력을 알리는 설명회 실시

○ 학기 중 전국 수산계 고교 대상 순회 설명회 또는 승선 실습 시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여 실시

\* 예산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홍보예산(5억원)에서 활용

# 사례

## 3

- (산학연계 강화) 선사와의 연계강화를 위해 실무교육(어선운항, 그물 보수, 라인 작업 등)에 해당 선사 직원을 일일교사로 파견, 현장 노하우 전수
  - 수산계고, 지역 업계 간의 교육 일정, 실습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
  - 선사 채용담당자를 일일교사로 하여 학생들에게 선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선사 채용 조건 등 교육
    - \* 희망 학생에 대하여는 선사와 연계하여 직접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등 참관 교육
- (실습 장비 등 지원) 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어선해기사 육성을 위해 실습 장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취업 지원) 지원 방식 개선
  - (선택 · 집중) 취업률을 포함한 특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별 예산의 차등지원으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노후 실습장비 교체
    - \* 우리 부에서 실습 장비(7억), 특성화 프로그램(6억) 지원 중
      - 학교별 특성화 사업, 승선자수 등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비교체의 효율성 및 활용성 제고
        - \* (현재) 1/N로 9개교 배분 → (개선) 우수 1~3개교 집중(교장단협의회에서 선정)
    - (장비현대화) 어선 해기사 육성에 필수적인 실습 장비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청과 중장기적인 구입 · 교체방안 마련 추진(교육청 예산협조)
      - 현 보유장비 등의 내구연한 · 필요 장비 조사 실시 및 적시 교체 추진
  - (장학금 확대) 승선학과 재학생의 중도 이탈 및 진로 변경을 예방하고 승선 분야 취업 동기부여를 위해 장학금 제도 정비 및 확대
    - 우리 부, 노조, 선사 등에서 다양하게 지원 중인 장학금\*을 승선학과 학생들에게 우선하여 지원토록 유도
      - \* 우리 부(5.8천만원) : 연 50만원/인(고교) / 수협 선사(대형선망 등), 선원노조 등 연간 1억 지원

- 7 -

- 노조, 선사 등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방식을 해기사 면허취득 또는 예정인 학생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 노조 장학금 지원학교\*(승선학과 위주)를 확대(현 3개교 → 4개교)하고 기타 선사 등의 장학금 규모도 확대 유도
    - \* (기준) 충남고, 경남고, 포항고 → (확대) + 완도고 등
- (교사협의회 운영) 학교별 교육과정 효율성 제고, 우수사례 전파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한 수산계 고교 경쟁력 제고
  - 매년 2회(상 · 하반기) 승선학과 7개 학교 교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 교육과정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정부 지원 건의사항 발굴 등
    - \* '22년 상반기 중 제1회 교사협의회 개최 추진

### ③ 졸업 단계

- 전국 단위 어선원 취업설명회·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졸업생과 선사 간 일자리 매칭 지원
  - (취업연계) 노·사·정 공동 청년 어선원 취업 · 채용박람회 개최\*, 연수원 승선 실습 수료식 현장에서 면접 및 채용 추진
    - \* 수요처(선사)가 교육생의 숙련도 등 파악, 수료식 현장에서 면접 및 채용
  - 공동실습선 건조 후(25년)에는 전국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졸업생들을 승선 실습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장려금 지급) 취업 · 채용박람회에서 채용된 청년 어선원에 대해 취업준비금\*, 장기승선장려금\*\* 지급(부원→해기사 확대 검토)
    - \* 취업준비금 : 채용 확정일로부터 승선 일까지 월 50만원(최대 3개월)  
장려금 : (1차) 승선 6개월 이상 100만원 / (2차) 승선 12개월 초과 승선공인 2회 추가 100만원
    - \*\* 소요예산(100명 기준) : 3.5억원 / (준비금 150만원+장려금 200만원)×100명

- 8 -

# 사례

## 3

### 2. 연수원 역할 및 기능 강화

- ◆ 해양수산연수원의 전문교육, 실습선 등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산계 고교 학생 및 비수산계 청년 어선원 양성

#### ① 수산계고 승선실습 체계 개선

- 현재 이원화<sup>\*</sup>되어 있는 재학생 승선 실습을 연수원으로 일원화
  - \* 실습선 보유학교(3개교)는 자체실습선, 비보유 학교(4개교)는 연수원 실습선 활용
- 학교별 자체 승선 실습에 대한 한계<sup>\*</sup>를 해결하고 첨단장비를 갖춘 신조선에서 다양한 어로 실습(선망, 연승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 추진
  - \* 선박노후화, 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신기술 교육장비 부재, 다양한 어법실습 곤란 등
- '22년 예산에 반영된 공동실습선 건조('25) 후 본격적으로 실시, 그 이전에도 기존 연수원 선박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희망자 수용
  - \* '23년부터는 포항해양과학고는 자체실습선 운영을 중단하고 연수원 교육 예정

####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2,500톤급, 120명 승선) 1척 건조
- (총사업비/기간) 420억원(국비 50%, 교육청 50%\*) / '22~'25년
  - \*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 ('22)10(해수부 5) → ('23)164(82) → ('24)164(82) → ('25)82(41)
  - \*\* 설계비 10억원 중 교육청 부담분 5억원은 확보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부가 부담
- (건조 및 운영) 한국해양수산연수원(건조 후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

- 그간 운영비 부족의 사유로 주로 연안에서 운영하던 실습선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원양항해 실습 등 확대 추진
- 향후 운영비(공동실습선)는 교육청이 부담할 계획으로 현 교육청 부담 상황<sup>\*</sup> 고려 시 운영비 증가가 가능함으로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 교육
  - \* 현재 3개 교육청에서 3개 학교 선박운영에 30억원 가량 지원 중, 기존 연수원 선박 운영비 10억 감안 시, 운영비 증가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교육도 가능 예상

### ② 재학생 및 교사 전문성 강화

- 연수원 교원들의 전문성과 승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승선 실습 기간 학생들에 대한 전공과목 추가 교육 및 교사들에 대한 교육 추진
  - (전공과목 교육 강화) 재학생 대상 승선 실습 기간 중 어선·어업 실무 외에 양질의 전공과목 강의 제공
    - 졸업 선배, 수산 분야 성공가 등과의 주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승선희망생 진로상담 및 지도 관리로 이탈 방지
  - (교사 전문성 강화)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한 교원 직무 연수(교육) 실시
    - 수산계고 교사 중 어선 분야 비전문가,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사 대상으로 승선 실습 또는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③ 일반인 어선 해기사 양성 강화

- (5급해기사 과정 확대) 기존 격년 단위 30명 모집을 매년 30명으로 교육 정원 확대 검토
  - 귀여·귀촌자 대상 홍보, 어선 해기사 모집이 가능한 관련 기관·단체(수협, 선원노조 등)와 협조, 교육생 모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6급해기사 과정 신설) 단기간<sup>\*</sup>에 어선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일반인 어선 6급 교육과정 신설 운영
  - \* 교육과정 : (현재) 외항상선 3급, 내항상선 5급, 어선5급 → + 어선 6급
  - \*\* 교육기간 : 어선 5급 총 5개월(이론4+실습1), 어선 6급 총 3개월(이론2+실습1)

#### ④ 전담부서 신설 등

- 수산계 고교생 교육 강화, 오션폴리텍 과정(어선) 확대 등 어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별도의 수산 분야 전담부서(수산교육팀) 신설
  - \* (현재) 오션폴리텍팀[(승선실습(상선+어선), 오션폴리텍(상선+어선)]에서 수산 담당

# 사례

## 3

### 3. 교육부·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 ◆ 우리부가 수산계고교 교육과정(입학·재학·취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

#### ① 마이스터고 확대

- 학령인구·수산계 고교 지원 감소에 대비,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졸업에 유리한 마이스터고를 권역별<sup>\*</sup>로 확대
  - \* 남해권 : 완도수산고(14, 개교) → 동해권 : 포항해과고(23, 개교) → 서해권 등으로 확대
- 다만,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지자체, 교육청, 교육부)의 협조가 필수적, 우선 희망학교 등과 논의 및 공감대 형성 추진
  - \* 마이스터고 선정(교육부) 시, 예산추가 지원으로 실무중심 교육 확대 가능

#### ② 교육청과의 정례협의회 개최

- 교육청 등과 정례협의회를 통해 수산계 고교 개선방안 마련
  - 수산계 고교 활성화 방안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지원(신입생 유치 홍보, 실습장비 등 구입, 취업박람회 개최 등) 및 교과과정 개편 등
- 수산 후계인력 양성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청 관계자 대상 실습선 승선체험 및 우리 부 각종 해외 현장견학 프로그램에 참여

#### ③ 수산계고교 활성화 협력

- (MOU체결) 공동실습선 건조 예산 반영을 계기로 우리 부·교육부·5개 교육청<sup>\*</sup>간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 MOU체결
  - \* 인천·충남·전남·경북·경남 교육감(승선학과 수산계고교 소속 교육청)
- 실습생 안전 확보, 교육여건 개선 및 수산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사업 추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계고교 활성화를 위해 MOU 체결

### 4. 어선원 모집·취업 지원 강화 등

- ◆ 업계(원양, 대형선망 등), 수협(일자리지원센터), 한수연(연근해 선주) 등과 협동으로 적극적 어선원 모집 및 주거시설 제공 등 재정지원 확대

#### ① 일자리 연계 지원 및 취업 촉진

- (일자리센터 기능확대) 단순 상담 역할에서 구인·구직자를 직접 찾아가는 역할로 전환하여 어선원 근무 희망자 발굴 및 선사 취업 연계
  - \* 센터는 해기사보다는 주로 부원 선원 발굴 및 취업 연계에 집중

##### <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개요 >

- (조직) 중앙회, 지역 8개소(부산, 강원, 전남, 전북, 충청, 경북, 경인, 제주)
- (인원) 중앙회(2) 지역별 1인 등 총 10명
- (실적) 연간 약 4천 건 상담 중 2~4백명 취업 연계(어선, 양식업, 가공업 등)

- (찾아가는 어선원 모집활동) 업계(원양, 대형선망 등), 수협(일자리지원센터), 한수연(연근해 선주) 등과 협동으로 적극적인 어선원 발굴

- 보호 종료 자립 준비 청년<sup>\*</sup>(만 18세, 연 2,500명) 등을 대상으로 어선원 홍보, 어선원 취업 및 주거시설 제공 검토

\* (관계부처 협동) : 자립수당 등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진학·취업지원 등 자립역량 지원

- (수산인 행사시 구인·구직) 단순상담 → 각종 지역 수산인 행사(한수연 행사, 수산인의 날 등) 시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구인·구직 활동 추진

\* 한수연 : 전국단위 중앙대회 및 시·도대회(연간 12회) 연간 2만여명 참석

- (취업연계) 수협(선원 공급)과 한수연(선원 수요)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직희망자와 구인희망자를 연계하여 취업 지원

- 어선원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사가 동행하여 면접 과정 지원 및 이력서 작성 등 구직활동 지원

- 한수연 회원인 어선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어선 승선체험을 통해 어선 업무 적응도를 높이고 부적응자는 승선 배제

# 사례

## 3

### ② 비수산계 인력을 활용한 어선 해기사 확충

- (귀어귀촌인) 어선어업에 관심이 있는 귀어인을 발굴, 연수원 전문교육 연계 및 각종 지원으로 어선 해기사 육성 및 어촌 정착 유도
- 귀어귀촌종합센터 등<sup>\*</sup>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상담 시 어선어업에 관심이 있는 귀어인에 어선 해기사 교육 안내 지원
  - \* 귀어귀촌지원센터(8개소) :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강원, 제주  
귀어학교(6개소) :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연수원 어선해기사 교육과정으로 연계, 자격취득 후 현지 선배 어선원 또는 선주의 멘토링을 통해 어선주로의 독립 지원
- (제대군인) 장기 복무 후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어선 해기사 유입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추진
-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와 연계하여 어선 해기사 구인정보 제공 및 자격취득 교육과정 안내 등 추진
  - 승선경력을 보유한 해군장병 유입을 위해 해군과 협력, 전역장병 대상으로 선사와 함께 어선 해기사 취업설명회 실시
- 어선어업 희망 제대군인을 선별, 연수원에서의 재교육을 통한 5·6급 어선 해기사 면허 취득 및 취업 지원

### ③ 주거 및 어선구입 등 자금 지원

- 청년 어선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교육훈련, 창업을 위한 목돈 마련 자금 지원 등 추진
- (주거지원) 선원취업에 큰 어려움인 주거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숙소시설을 지원하여 어선원 구인·구직 연계(선주·선원 지원 견의)
  - (청년 어선원 숙소) 보호 종료 자립 준비 청년, 타 지역 선원들을 위한 어항 지역에 숙소 지원방안 검토

- (귀어인의 집 사업)<sup>\*</sup> 신규 어선원 포함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주거시설 활용

\* 귀어인의 집 : 귀어희망자가 일정기간 체류, 기술체득 및 어촌체험 후 귀어 유도용 임시거처

\*\* '22년 시범사업 : 1.5억원(국비 5 : 지자체 5), 6개소(경남 2, 경북 2, 전남 1, 강원 1)

○ (교육지원) 창업 어선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및 '귀어학교'과 연계 신규 어선원의 어업기술 습득 교육 지원

\* 후견인에 월 60만원(최대 10개월) 지급(월 6회 이상 후견 및 월 3회 이상 방문 멘토링)

\*\* 귀어학교(7개) : 경남(통영), 충남(보령), 전남(강진), 강원(강릉), 경기(안산), 경북(포항), 충북(충주),  
(교육예산) : 개소당 2억원(국비 1.4 : 지자체 0.6) 강사료, 숙식비, 현장실습비 등

○ (창업지원) 청년어선임대사업<sup>\*</sup>과의 연계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수산계고 출입생 등 청년 어선원에게 어선 임대 우선지원\*\* 추진

\* 임대규모(누적) : ('22上-시범) 10 → ('23) 50 → ('24) 100 → ('31) 2,000척  
연간 임차료 어선구입비 0.5%, 최대 10년 임대, 구입비 전액 상환 시 소유권 이전

\*\* 선정기준(1순위) : (기준) 39세 이하 해기사 → (개선) + 수산계학교 출신(어선안전정책과 협의완료)

○ (청년 어선원 채용선사 지원, 고용부·증기부) 청년 어선원 채용 시 지원으로 채용 촉진, 어선원의 초기자금 마련 및 장기근속 유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사지원) 올해부터 본 사업시행으로 선사들에 적극 홍보(만 34세이하, 정규직)

\* '21(시범) : 월 75만원(최대 900만원), '22 : 월 80만원(최대 960만원)

- (정부-기업-청년공동적립제) 지원 조건(만 34세이하, 정규직)을 충족 할 수 있도록 선사 채용방식 개선을 통해 어선원에도 적용 추진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 2년 최대 12백만원 적립(정부 6 : 고용주 3 : 청년 3)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증기부) = 5년 최대 30백만원 적립(정부 10.8 : 고용주 12 : 청년 7.2)

⇒ 원양선사 및 대형선망 등 업계에서도 청년 어선원 채용 및 장기 근속 유인을 위해 동 사업 조건인 정규직화 등 검토 계획

\* (연안어선) 단기채용(2~3개월) 및 4대보험 가입률 저조(8.7%)로 제도활용 곤란

○ (어선원 직불금 지원) 청년 어선원 승선 유인을 위해 직불금 지원 대상을 어선원까지 확대 추진 검토

# 사례

## 3

### 5. 근로 예건 개선(중·장기과제) 및 인권침해 방지

◇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보장, 선내 복지 공간 확충, 설비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통한 승선기피 사유 해소

#### ①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수준으로의 근로여건 개선

- (근로환경 개선) ILO 어선원 협약에 따른 선원실, 휴게실, 화장실 등 선내 공간 기준<sup>\*</sup>을 국내 어선에 적용, 어선원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
  - \* 거주실 높이(1.9m이상), 면적(2.0m<sup>2</sup>이상/인), 조리실(24m≤선박길이), 식당(선원실과 분리) 등
- (신조 어선) ILO에서 규정하는 선내 복지공간 확보 등의 규정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건조하여 어선의 현대화 추진
  - 어선원 안전·복지 공간 확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sup>\*</sup> 지원(이차보전)
    - \* (대상) 근해(선망, 권현망, 쌍끌이) 및 연안 5개(연안복합, 자망, 통발 등)업종
  - (기준 어선) 열악한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복지시설(개인침대, 화장실, 조리실 등)은 톤수에서 제외하여 개선 유도
  - (조업의 기계화) 어선원들의 작업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작업 단계별 기계화 방안 및 제품 개발
    - \* '22년도 수산기자재 표준화 및 기계화 방안 마련 연구(2.8억원) 실시
- (근로조건 개선) 상선수준으로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어선원 근로 복지, 당직근무 국제기준인 C 188<sup>\*</sup> 및 STCW-F<sup>\*\*</sup> 협약 국내 법제화 추진
  - \* ILO 어선원 노동협약, \*\*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국제기준
- (승선기간, 휴식시간) 어선원이 송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대 승선 기간을 정하고, 휴식 시간(1일 10시간, 7일 77시간) 보장방안 마련
- (안전·보건) 선내 근로 위험 예방, 어구·조업지식 교육훈련, 선내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어선안전조업법 개정)
- (당직부담 완화) 선박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당직사관과 부원 배치의 의무화로 당직 선원의 근무 부담 완화 가능(선원 추가 고용 부담)

#### ② 선상 인권침해 방지 등

- 선원에 대한 인격모독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선사·선주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연수원) 실시 등
  - (인권침해 예방) 선사, 선주단체 대상 인권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연수원 내 특별강좌로 개설, 의무 수강 등을 통한 개선 추진
    - 해경, 선주단체, 노조,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내 인권 관련 현장 점검 추진
  - (인식개선) 선원 경시 풍조 균절,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수협, 한수연 등과 일반시민 대상 현장(수산시장, 대형마트 등) 캠페인 추진

# 사례

## 3

VI. 추진 일정		
세부과제	'22년	
	상반기	하반기
<b>[1] 수산계고 활성화를 통한 어선 해기사</b>		
<b>1. 입학 단계</b>		
①전국단위 홍보	· 홍보 방안 및 예산 협의(교육청 등) · 홍보계획 수립	· 홍보물 제작, 게시, 방송
②신입생 유치	· 승선체험 통합 운영 협의(전학교)	· 승선 체험(개별, 공동)
<b>2. 재학 단계</b>		
①승선동기 부여	· 성공모델 순회 특강 및 진로상담 추진계획 수립	· 선사 및 추진조직(1회)
②실습장비 지원	· 교체장비 수요 조사(각 학교)	· 노후장비 계획 수립 · 예산지원
③특성화 사업 개선	· 개선 방향 설명 및 협의	· 평가 및 배분(교장)
<b>3. 졸업 단계</b>		
①취업 연계	· 취업채용박람회 개최 계획	

세부과제	'22년			
	상반기	하반기		
<b>[2] 연수원 역할 및 기능 강화</b>				
<b>1. 수산계고 승선 실습 체계 개선</b>				
①승선실습 일원화	· 공동실습선 기본설계			
②재학생 및 교사 전문성 강화	· 교사 직무연수 과정 개설			
<b>2. 일반인 어선해기사 양성 강화</b>				
①교육과정 확대	· 어선원 교육운영 계획 수립(연수원)	· 일반인 교육 확대		
②교육과정 신설	· 어선 6급 검토 및 신설			
<b>3. 전담부서 신설 등</b>				
①전담조직 신설	· 연수원 기능 등 조직 진단			
<b>[3] 교육부,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b>				
<b>수산계고교 활성화 협력</b>				
①협력 및 지원 강화	· MOU 체결(2월)			
②마이스터고 확대				
<b>[4] 어선원 모집 및 취업 지원 강화 등</b>				
<b>1. 일자리 연계 지원 및 취업 촉진</b>				
①일자리센터 기능 확대	· 수협, 한수연 협의체 구성			

세부과제	추진일정					
	'22년		'23~24년	'25년 이후		
세부과제	상반기	하반기				
<b>2. 비수산계 일반인 어선해기사 확충</b>						
①귀어인	· 업무연계 협의 및 MOU 체결 (귀어센터+연수원)		· 귀어인 교육생 모집 · 어선해기사 육성	· 계속~		
②제대군인 등	· 업무연계 협의 및 MOU 체결 (제대군인지원센터+귀어센터)		· 제대군인 모집 · 어선해기사 육성	· 계속~		
<b>3. 청년 어선원 자립 지원</b>						
①주거 지원	· 귀어인집 시범사업(6개소) · 청년 어선원 숙소 지원방안 검토		· 매년 90개소 · 청년 어선원 숙소(1개소)	· 총 300개소 조성 · 확대 지원		
②교육 지원	· 귀어학교 운영(7개소) · 초보어업인 멘토링		· 귀어학교 확대 · 계속~			
③창업 지원	· 어선 임대 시범사업(10척)		· 매년 50척	· 총 2,000척(~'31)		
<b>[5] 근로여건 개선(중장기) 및 인권침해 예방</b>						
<b>1. 근로여건 개선</b>						
①복지공간 확충			· 국제기구(ILO등) 복지공간 기준 검토			
②주거설비 개선			· 국내 어선 실태조사 · 선박개조 지원 방안 검토			
<b>2. 인권침해 예방</b>						
①인권교육	·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시범교육 실시 (선사 등)	· 인권교육 실시 (연 2회)	· 계속~		
②인식개선	· 인식개선 관련 현장 의견수렴	· 인식개선 사업 계획 수립	· 대국민 캠페인 실시(연중)	· 계속~		

# 사례

## 3

참고 1 취업 어선원 연령대별 현황(한국선원통계연보)

		2010년	2015년	2020년
20대 이하	합계	282	612	365
	해기사	84	148	206
	부원	198	464	159
30대	합계	2,059	1,608	676
	해기사	438	119	77
	부원	1,621	1,489	599
40대	합계	6,238	4,436	2,172
	해기사	1,752	1,090	526
	부원	4,486	3,346	1,646
50대	합계	8,010	7,012	5,520
	해기사	3,065	2,715	2,006
	부원	4,945	4,297	3,514
60대 이상	합계	1,242	3,152	6,242
	해기사	706	1,754	2,890
	부원	536	1,398	3,352
<b>합계</b>		<b>17,831</b>	<b>16,820</b>	<b>14,975</b>

\* 통계출처 : 한국선원통계연보 연근해(20톤이상) 및 원양어선 취업 현황

참고 2 국내 수산계고 졸업생수 및 승선 현황(2020년)

학교명	졸업생수		승선 현황	
	전체	승선학과(A)	승선자수(B)	승선률(B/A)
완도수고	81	39	23	59.0
충남해과고	92	47	14	29.8
인천해과고	158	56	8	14.5
포항해과고	115	64	12	18.8
경남해과고	36	36	15	41.7
성산고	42	42	1	2.4
울릉고	9	9	-	-
신안해과고	46	승선학과 없음	승선학과 없음	승선학과 없음
여수해과고	27	승선학과 없음	승선학과 없음	승선학과 없음
<b>계</b>	<b>606</b>	<b>293</b>	<b>73</b>	<b>24.9</b>

수산계고 승선학과 학년별 재학생수('21.6)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항해 전공	176	138	128	442
기관 전공	72	82	75	229
<b>계</b>	<b>248</b>	<b>220</b>	<b>203</b>	<b>671</b>

# 사례

## 3

참고 3 최근 5년간 학교별 졸업자 승선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인천 해과고	충남 해과고	여수 해과고	신안 해과고	완도 수고	포항 해과고	포항 과기고	울릉고	경남 해과고	제주 성산고	
5년간	졸업생수	3,430	968	458	174	244	413	671	62	44	171	225
	승선학과 졸업생 수(A)	1,611	373	236	-	-	190	371	62	34	171	174
	수산계 취업	1,506	303	193	71	130	296	294	40	19	95	65
	승선자수(B)	378	52	67	-	-	104	69	4	4	68	10
	승선률(B/A)	23.5	13.9	28.4	-	-	54.7	18.6	6.5	11.8	39.8	5.7
2021년	졸업생수	484	114	83	38	45	80	69	-	4	22	29
	승선학과 졸업생 수(A)	207	42	42	-	-	36	32	-	4	22	29
	수산계 취업	144	41	23	2	4	44	12	-	1	12	5
	승선자수(B)	61	6	14	-	-	14	10	-	1	12	4
	승선률(B/A)	29.5	14.3	33.3	-	-	38.9	31.3	-	25.0	54.5	13.8
2020년	졸업생수	606	158	92	27	46	81	115	-	9	36	42
	승선학과 졸업생 수(A)	293	56	47	-	-	39	64	-	9	36	42
	수산계 취업	211	45	35	8	29	49	26	-	-	15	4
	승선자수(B)	73	8	14	-	-	23	12	-	-	15	1
	승선률(B/A)	24.9	14.3	29.8	-	-	59.0	18.8	-	-	41.7	2.4
2019년	졸업생수	725	196	93	33	51	81	154	21	10	36	50
	승선학과 졸업생 수(A)	365	77	47	-	-	36	88	21	10	36	50
	수산계 취업	244	10	27	19	30	60	49	13	5	20	11
	승선자수(B)	63	2	9	-	-	21	11	1	1	17	1
	승선률(B/A)	17.3	2.6	19.1	-	-	58.3	12.5	4.8	10.0	47.2	2.0
2018년	졸업생수	781	233	93	33	50	85	168	19	10	38	52
	승선학과 졸업생 수(A)	357	94	50	-	-	40	93	18	-	38	24
	수산계 취업	415	95	53	17	33	67	93	8	10	19	20
	승선자수(B)	75	18	17	-	-	19	9	2	-	8	2
	승선률(B/A)	21.0	19.1	34.0	-	-	47.5	9.7	11.1	-	21.1	8.3
2017년	졸업생수	834	267	97	43	52	86	165	22	11	39	52
	승선학과 졸업생 수(A)	389	104	50	-	-	39	94	23	11	39	29
	수산계 취업	492	112	55	25	34	76	114	19	3	29	25
	승선자수(B)	106	18	13	-	-	27	27	1	2	16	2
	승선률(B/A)	27.2	17.3	26.0	-	-	69.2	28.7	4.3	18.2	41.0	6.9

\* 포항과기고는 '19년에 일반고로 전환 / 여수해과고, 신안해과고는 승선관련학과 없음

\*\* 자료 출처 : 각 수산계 고등학교

참고 4 22학년도 수산계고 승선학과 신입생 모집 현황(22.2)

(단위 : 명, %)			
학교명	정원	모집 (입학예정자)	모집률
완도수고	36	36	100
충남해과고	40	40	100
인천해과고	84	34	40.5
포항해과고	69	21	30.4
경남해과고	40	23	57.5
성산고	46	28	60.9
울릉고	22	3	13.6
계	337	185	54.9

※ 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내역 : 185명 (항해 121명, 기관 64명)

참고 5 어선 규모별 척수 및 승선 해기사수(추계산정)

(단위: 척, 명)			
구 분	척수	척당해기사수 (승선평균)	해기사수
연근해어선* (21기준)	합계	13,041	<b>16,791</b>
	소계	<b>12,852</b>	<b>15,733</b>
	5~9t	9,234	1, 9,234
	10~19t	1,070	1, 1,070
	20~29t	1,052	2, 2,104
	30~49t	527	2, 1,054
	50~99t	693	2, 1,386
	100~199t	219	3, 657
원양어선** (20기준)	200t 이상	57	4, 228
	소계	<b>189</b>	<b>1,058</b>
	200~499t	127	4.8, 608
	500~1,599t	47	6.5, 303
	1,600~2,999t	12	9.5, 114
	3,000t 이상	3	11, 33

\* 어선통합정보시스템 6만 척 중 5t 미만 제외(선박직업법 비적용)하고 업계통상 해기사 승선현황 반영 산출

\*\* 2021년 한국선원통계연보 : 톤수별 선박 및 해기사 승선 현황(원양어선)

# 사례

## 3

### 참고 6 일본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례 및 취업 현황

#### <일본 수산계고교 승선 관련 특성화 사례>

도도부현	학교명	설치학과	설치년도	모집인원	교육 내용
야마가타	카모 수고	해양기술과	1999	40	◦ 선박에 관한 지식과 항해·기관·어업기술 및 소형선박·공학·마린스포츠 등 학습
후쿠시마	해양고	해양과	1995	40	◦ 선박조종, 종합어업, 수산생물자원, 해양관광, 마린스포츠, 해양환경 등 폭넓게 학습
		해양공학과		40	◦ 선박, 해양, 수산에 관한 기술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고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취득
니가타	해양고	해양공학과	1993	35	◦ 2년차부터 2유형으로 나누어 학습
		(해양공학유형)			◦ 선박기관, 해양개발, 항만 등
		(마린기술유형)			◦ 해양조사, 잠수, 해양레저 등
도야마	해양고	해양기술 스포츠과	1999	50	◦ 3개의 코스로 나누어 학습
		(생물학과)		15	◦ 선박조정, 근해·연안어업, 해양바이오, 해양 환경, 해기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취득
		(마린스포츠과)		15	◦ 조선 잠수 등의 실기 및 조난구조, 해양생물 환경 등 학습 잠수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취득
		(해양동학교과)		20	◦ 선박기관 조종, 어로설비와 정비, 전기공학, 기계설계 및 해기사, 소형선박조정사 자격취득
이시카와	노토호 쿠신고	해양과	2000	40	◦ 해양환경·잠수·해양레저 등 ◦ 해기가 자격취득 관련 지식과 기술 학습
미에현	수고	해양과	2000	30	◦ 해양기술코스, 항해기술코스 ◦ 실습선에 의한 항해실습 실시

#### < 일본 수산계고교 취업현황 >

(단위 : 명)

구분	진학자		수산·해양관련 산업 취직자  어선 승선 상선 승선	非관련 취업자 791	진로 미정자 37	계 3,078 100%
	전공외	전공과				
	840	250				
2017년	27%	8%	38%	4%	7%	26% 1% 100%
	925	235	868	74	52	1,141 102 3,571 40% 3% 100%
2007년	26%	7%	24%	2%	2%	-

☞ 일본 내 수산계고교는 50개(2010년)로 어업실습을 포함하여 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3D업종이란 인식에 학생수는 감소 중인 반면 승선률은 증가추세이나 어선원은 연 100명 내외

### 참고 7 일본 선원양성 교육기관 및 체계

#### < 일본의 선원양성 교육기관(어선) >

소관	교육기관	입학자격	재학기간			졸업후 전공과 진학	필기시험 면제
			전체	이론	승선 실습		
문부 과학성	수산계대학	일반고교졸	4년	4년	-	1년 (승선실습)	3급
	수 산 계 고 교 부 과 학 성	수 산 계 고 교 부 과 학 성	일반중학졸	3년	2년 10개월	2개월	- 5급(4급)
	전공 과	수산계고교 본과수료	2년	9개월	1년 3개월	-	3급

#### < 일본의 선원양성 교육기관(상선) >

소관	교육기관	입학자격	재학기간			졸업 후 승선실습	필기시험 면제
			전체	이론	승선 실습		
문부 과학성	해사계대학	일반고교졸	4년	3년 6개월	6개월	6개월	3급
	고등전문학교	일반중학졸	5년 6개월	4년 6개월	1년	1년	3급
국토 교통성	해기대학교	해상기술단대졸	2년	1년 6개월	6개월	-	3급
		해상기술학교졸	2년	1년 3개월	9개월	-	
	해상기술 단기대학교	일반고교졸	2년	1년 3개월	9개월	-	4급
	해상기술학교	일반중학졸	3년	2년 9개월	3개월	6개월	4급

# 사례 4

산업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캐릭터(Character) 산업 육성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2018. 11.)

## I 추진 배경

- 타 문화산업과 다양한 접목이 가능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되는 국산 캐릭터 시장 활성화 필요
  - \* 캐릭터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인형, 학용품, 의류 등 3,000여 연계 상품 출시
  - \*\* 2017년 국내 캐릭터 시장 규모는 8조 5,000억원으로 연평균 11.6%의 높은 성장세

< 다양한 캐릭터 활용 사례 >



- 세계 캐릭터 시장은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캐릭터 시장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신홍국 시장 선점 필요
  - \* 세계시장 전망치 : 2018년 1,806억달러 규모로 2015년 이후 매년 4% 성장 예상
- 국산 캐릭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나 기획, 라이선싱 비즈니스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체계화된 산업 형성에 한계
  - \*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며 비즈니스 네트워크 취약하고 독자적 유통창구를 찾지 못해 대중적 인기와 상품화 기회 상실
- 캐릭터 산업의 성장세에도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창작·기획 역량의 부족으로 산업의 파급력 발휘 저하
  - \*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유아·어린이용 캐릭터 편중 현상 심화
- 캐릭터 산업의 다양한 연계 가능성에도 정부지원 규모의 한계로 선진적인 캐릭터 창작 및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전문인력 양성 및 투자환경 조성 등의 후방지원체계 미약

## II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 방향
  -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스타 캐릭터 집중 발굴 육성
  - 선진화된 캐릭터 산업기반 육성 및 역량 강화로 자생력 있는 산업으로 체질 강화
  -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차세대 한류 주자로서의 K-캐릭터 위상 확립
- 추진 목표
  - 창작 역량 제고 및 인큐베이팅 강화
    - 참신한 아이디어가 신규 캐릭터 개발과 창업·산업화로 이어지도록 창작 활성화 및 인큐베이팅 서비스 지원
    - 영세한 기업의 창작활동 장려를 위한 제작 장비 제공
  - 산업간 연계 강화 및 유통·향유 기반 확대
    - 타 산업과의 연계 강화로 OSMU(One-Source, Multi-Use)로써의 캐릭터 가치를 확산하고 연쇄적인 고부가가치 지속 창출
    - 다양한 소비접점 확보를 통한 향유기회 확대로 캐릭터가 신경제산업 및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토록 지원
  - 적극적 글로벌 마케팅·프로모션 지원
    - 참신한 국산 캐릭터의 전략적인 해외 진출 마케팅 및 사업화를 지원
    - 글로벌 캐릭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 강화
  - 비즈니스 역량 강화
    - 산업 발전의 플랫폼 마련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투자 재원 확대 조성으로 안정적 정착 및 사업 여건 조성
  - 산업구조 선진화·미래화
    - 추격형 산업에서 선도형 산업으로 국내 캐릭터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미래 글로벌 캐릭터 산업을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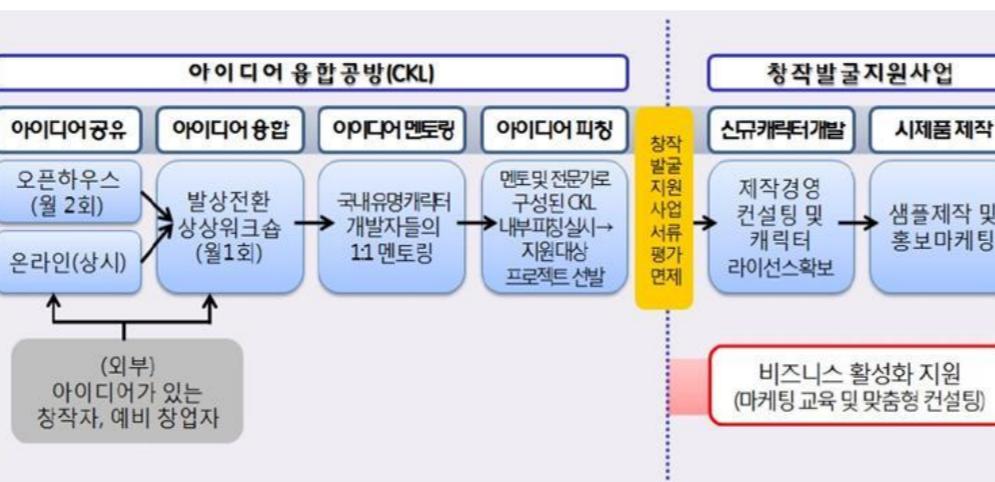
# 사례 4

## III 추진 과제

### □ 창작 역량 제고 및 인큐베이팅 강화

- 우수 신규 캐릭터 발굴 확대
  - 개인, 업체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캐릭터 공모대전 개최
- 창작 발굴 지원 강화
  - 디자인 개발, 저작권·상표권 등록,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신규·중소업체 대상 지원으로 업계 신규 진입 희망자 독려
- 캐릭터 창작 랩 구축·운영
  - 콘텐츠코리아랩의 '아이디어 융합공방' 프로그램의 우수 아이디어 결과물과 '캐릭터 창작 발굴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체계적 지원

#### < 캐릭터 창작 랩 >



### ○ 캐릭터 기업 인큐베이션 활성화

-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 수상자 및 캐릭터 창작 랩 참여자 중 우수 작가/업체를 대상으로 창업화를 지원

- 3 -

- 콘텐츠코리아랩의 '창업발전소' 프로그램과 연계, 창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 < 캐릭터 공모대전/캐릭터 창작 랩과 창업발전소 연계 >



### ○ 캐릭터 개발 장비 활용 지원

- 캐릭터 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대상 제작도구 활용 지원

### □ 산업간 연계 강화 및 유통·향유 기반 확대

#### ○ (가칭) 「캐릭터 산업 대전」 개최

- 캐릭터를 활용한 가구, 생활용품 등의 아이디어 상품 전시·판매 및 공공서비스 부문 캐릭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 캐릭터 업계와 타 산업계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행사 개념으로 추진

#### ○ 캐릭터와 타 산업 간 협업 사업 발굴 지원

- 캐릭터를 활용한 산업 간 협업 프로젝트 개발 및 관련 컨소시엄 대상 상품 제작 및 마케팅·프로모션 등 지원

- \* (사례) 네이버 라인 캐릭터를 적용한 렌터카 서비스, 인기 학습만화 'Why' 캐릭터를 래핑한 티웨이 항공기 등

- 4 -

# 사례 4

-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게임·뮤지컬·동화 등 OSMU 프로젝트의 제작 지원 확대
  - 기존 '생활속', '글로벌' 캐릭터 발굴 외에 '키덜트' 상품 제작 부문을 추가하여 산업간 연계 가능성 확산
  - \* (생활속) 휴대폰케이스, 블록 완구 등 일상생활 속 캐릭터 상품 (글로벌 RC카, 노래방기기 등 해외 시장 경쟁 가능한 캐릭터 상품 (키덜트) 영화 주인공을 소재로 한 프리모델, 아트토이 상품 등

< 연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성과 >

뮤지컬 <로보카 폴리> 30만명 관람, 매출 20억	뮤지컬 <번개맨의 비밀> 40만명 관람, 60억 매출	인형뮤지컬<빠삐에 친구> '14.4월 프라하 초청공연	게임 <라바 vs 악마군단> 카카오게임 입점, 대한민국 모바일앱어워드 으뜸앱 선정

- 캐릭터 특화거리·문화공간 조성
  - 지역 출신 작가의 캐릭터와 스토리, 지역 관광상품 및 지역별 특성을 연계한 캐릭터 특화거리 조성 지원
    - \* (사례) 라바-잠사 테마박물관, 코코몽-제주 에코파크, 서울시-재미로 등
  - 주민 친화공간인 지역별 생활문화센터(동호회방, 북카페 등 지역시설), 작은 영화관\* 등을 국산 캐릭터로 조성
    - \* 극장 부재 지역에 소규모 상영시설을 건립하여 조성한 영화관

## □ 적극적 글로벌 마케팅·프로모션 지원

- 기존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페어」의 글로벌 브랜드화
  - 글로벌 마켓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특별 전시·주제관 등 운영
    - \* 중국, 동남아 전략 지역 바이어 초청 확대 및 국가관 운영,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주제관 운영 등

- 특화된 해외 주요 마켓 참가 지원 확대
  - 기존 해외 주요 라이선싱 마켓 참가 지원 외에 장난감 마켓 신규 참가,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마켓 참가
    - \* 중남미 로드쇼(멕시코), 중동 콘텐츠 마켓(두바이), 리오 콘텐츠 마켓(브라질) 등
  - 한국공동관 운영(전시/상담부스 제공), 현지 기업방문 및 네트워크 지원

## ○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 전략 진출국의 해외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국산 캐릭터 상품 전시회 등 쇼케이스 개최 지원
-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과 연계, 국산 캐릭터 숍 입점, 상품과 캐릭터를 결합한 현지 프로모션 진행, 마케팅 활동 등 지원

## □ 비즈니스 역량 강화

- 라이선싱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
  -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절실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업인 재교육 활동 및 예비인력 대상 라이선싱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 캐릭터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라이선싱 비즈니스 전문 컬리큘럼 개설 지원
  - 콘텐츠진흥원 해외 지사를 활용하여 우수 캐릭터 개발사들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해외 비즈니스 지원 거점 구축·운영
- 비즈니스 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
  - 500억 원 규모의 캐릭터 상품 전문 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
  - 국내 캐릭터 업체 개상 투자자 홍보 교육 및 멘토링,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상담회 개최 등 비즈매칭 및 투자 유치 지원

< 콘텐츠 기업 투자 유치 지원 흐름도 >



# 사례 4

## □ 산업구조 선진화·미래화

- 최신 융·복합 기술 활용 '스마트 캐릭터' 지원
  - 사물인터넷, 스마트 토이\* 등 기 개발된 ICT 기술을 활용, 감성 로봇 등 미래형 캐릭터 상품 개발 및 제작 지원
    - \* 원구와 ICT를 융합, ICT 기술로 제어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원구
  - 3D 프린터를 활용한 캐릭터 시제품 제작 및 전송, 유명 캐릭터 소스 판매를 통한 B2C 형태의 신규 비즈니스 개발 지원 등

< 융·복합 기술 활용 캐릭터 상품 사례 >



- 디지털 캐릭터 기획·개발 및 상품화 지원
  - 대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및 제휴를 통한 뉴 미디어 기반 신규 디지털 캐릭터 상품 기획·개발 지원
  - 포털, 소셜 미디어 업체, 모바일 게임 개발사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캐릭터\* 개발자 간 비즈매칭 및 상품화 지원
    - \* 디지털화된 캐릭터를 온라인/모바일서비스 서비스 플랫폼 등에서 유통 및 소비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된 상품(이모티콘, 게임 콘텐츠 등)
- 공정환경 조성 등 효율적 후방 지원 체계 구축
  - 국내외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을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한 (가칭)'불법 유통신고센터' 구축·운영
    - \* 특허청, 관세청, 저작권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 협력하 신고센터 설치
  - 대한민국 캐릭터 정품사랑 캠페인 전개
  - 시장조사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하여 국내외 정책 및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
    - \* 업계 초청 세미나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정보·지식 공유의 장으로 활용

## IV 세부실행계획

### □ 추진일정 및 협업계획

핵심 과제	추진일정	주관, 협업
<b>1. 창작 역량 제고 및 인큐베이팅 강화</b>		
(1) (가칭)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 개최	2019상~	문체부
(2) 창작 발굴 지원 강화	2019상~	문체부
(3) 캐릭터 창작 랩 구축 운영	2019하~	문체부
(4) 캐릭터 기업 인큐베이션 활성화	2019하~	문체부
(5) 캐릭터 개발 장비 활용 지원	2019상~	문체부
<b>2. 산업간 연계 강화 및 유통·향유 기반 확대</b>		
(1) (가칭) '캐릭터 산업 대전' 개최	2019하~	문체부
(2) 캐릭터와 타 산업 간 협업 사업 발굴 지원	2019상~	문체부
(3)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2019하~	문체부
(4) 캐릭터 특화거리·문화공간 조성	2019상~	문체부
<b>3. 적극적 글로벌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b>		
(1)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의 글로벌 브랜드화	2019상~	문체부
(2) 해외 주요 마켓 참가 지원 확대	2019하~	문체부
(3) 국산 캐릭터 해외 쇼케이스 개최	2019하~	문체부
(4) 국내 기업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2019상~	문체부
<b>4. 비즈니스 역량 강화</b>		
(1) 라이선싱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운영	2019상~	문체부
(2) 대학 특별과정 운영 지원	2019상~	문체부
(3) 라이선싱 비즈니스 지원센터 구축	2019하~	문체부
(4) 캐릭터 상품 전문 투자펀드 조성	2019하~	문체부
(5) 투자 유치 지원	2019하~	문체부
<b>5. 산업구조 선진화·미래화</b>		
(1) 최신 융·복합 기술 활용 '스마트 캐릭터' 지원	2019상~	문체부
(2) 디지털 캐릭터 기획·개발 및 상품화 지원	2019하~	문체부
(3) 캐릭터 불법복제 유통 감시체계 구축	2019상~	특허청 등
(4) 대한민국 캐릭터 정품사랑 캠페인 실시	2019하~	문체부,
(5) 시장조사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	2019상~	문체부

# 사례

## 4

- (협업계획) 캐릭터 불법복제 유통 감시체계 구축 관련 특허청, 관세청, 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유통신고 센터 조성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업체계 구축

### □ 소요 예산

- 우선 2018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사전 협의 추진
  - 재원 확보를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9년 상반기 추진사업 선정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 창작 역량 제고 및 인큐베이팅 강화	5	17	17	23	23	85
2. 산업간 연계 강화 및 유통·향유 기반 확대	57	80	90	90	100	417
3. 적극적 글로벌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21	34.5	40.5	55.5	66.5	218
4. 비즈니스 역량 강화	8	14	23	25	29	99
5. 산업구조 선진화·미래화	5	11	11	11	11	49
합계	96	156.5	181.5	204.5	229.5	868

### □ 홍보계획

- 대한민국 캐릭터 정품사랑 캠페인 전개를 위한 입체적 홍보 실시
  - (기획기사/방송) 정품 캐릭터 구매 중요성에 대한 집중 취재 및 기획 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 언론 확산
  - (온라인)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기반 캠페인 실시
  - (정부가용매체) KTV, 정책브리핑, 주간 공감 등 활용하여 정품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실시
  - (집중홍보)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19.5월), 캐릭터 산업대전('20.11월),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19.12월) 등 주요 계기별 정품 소비환경 조성에 대한 집중 부각 홍보 추진
  - (기타) 정품 캐릭터 사랑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지원, 출입기자 및 블로거 정기 간담회 실시, 저작권 관련 저명인사 초청 특강 운영

- 9 -

## V 기대효과

- 기획·창작·상품화의 단계별 제작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창작 활성화 및 창작 역량 제고
-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한 대중과 유관업계의 관심도 제고 및 캐릭터 산업과 이종 산업 간의 성공적 연계 모델 발굴
- 국산 캐릭터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및 유통망 확보로 업계의 해외 비즈니스 기반 확대
- 라이선싱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투자 유치 기회 확대로 부가 수익 창출 확대 및 캐릭터 업계 성장 유도
- 완구, 패션 등 기존의 통상적 활용 범위를 넘어 캐릭터 산업 패러다임을 미래형 융복합 구조로 전환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 VI 행정사항

### □ 불법유통신고센터 조성협의회 구성·운영

- 기능 : 불법유통신고센터의 세부 운영 방안 수립 등
  - 구성안 : 문체부(2명), 특허청(1명), 관세청(1명), 콘진원(2명), 저작위(2명)
  - 추진계획
    - 협의회 구성안 마련(‘19.11월 말)
    - 제 1차 조성협의회 개최(‘19.12월 말)
- \* 세부 구성계획 및 운영 계획은 1차 협의회 시 결정하여 추진

### □ 재원 확보, 운용 방안 마련

- 2020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및 국회 협의 추진
  - \*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해당부서 및 교문위·예결위 위원에 적극적인 설명 및 협조 요청 필요
-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연차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예산운용 계획 마련(~‘19.1월)

- 10 -

# 사례

## 4

붙임1

### 과제/목표별 성과지표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8	'19		
국내 캐릭터 산업 매출액(조원)	목표	신규	9.2	전년도 매출액(8.3조원) 대비 201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11%) 적용 (8.3 * 111%)	캐릭터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16년 205) 중 500업체 표본 선정하여 방문면접 조사
	실적	-	-		
국내 캐릭터 산업 수출액(억불)	목표	신규	5.3	전년도 수출액(4.5억불) 대비 201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18%) 적용 (4.5 * 118%)	캐릭터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16년 205) 중 500업체 표본 선정하여 방문면접 조사
	실적	-	-		
국내 캐릭터 산업 고용률(만명)	목표	신규	3.0	전년도 고용실적(2.8만명) 대비 201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5%) 적용 (2.8 * 105%)	캐릭터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16년 205) 중 500업체 표본 선정하여 방문면접 조사
	실적	-	-		

\* 조사대상 : 전국의 캐릭터 산업 내 제작업, 상품유통업을 영위하여 매출을 발생한 사업체

# 사례

## 5

인공지능 혁신 허브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5.)

### I. 추진개요

#### 1 추진목적

- 산·학·연의 AI역량을 결집하여 해외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 창출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구심점 마련
  - 그간 축적된 최고의 연구역량(연구자, 인프라, 연구성과 등) 연계를 통한 개방적 협동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고난도이며·도전적인 대규모 첨단연구를 수행하고, R&D중심의 최고급 인재도 양성
  -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 총사업비(계획) : 5년('21~'25년)간 총 445억 원, '21년 45억 원

- 인프라 구축, R&D, 인재양성(우수인재 유치, 교육 등)에 활용

#### 2 운영원칙

- (도전) 실패가능성이 있더라도 성공 시 파급력이 큰 혁신적 연구에 도전
  - 고위험·도전형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율) 연구개발 전단계(기획·수행·평가)에서 연구자의 자율성 최대 보장
  - 연구주제·규모·개수, 사업비 및 인건비 사용 항목 간 조정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개방) 연구과제 제안·참여 및 인프라 활용 개방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도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컴퓨팅 자원의 개방적 연계·활용 추진
- (협력) 개별 주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협동연구 과제 발굴·지원
  - 고난도 문제해결이 요구되거나, 대규모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각 주체별 강점 분야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협동연구 과제 지원

### II. 추진방식

- ◆ 국내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결집·활용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개방적 가상 협업 연구체계(Virtual Open AI Innovation Hub) 마련
- 대학이 주도하는 그랜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가 AI 연구 및 인재양성의 Think Tank 역할을 수행
  - 많은 대학과 기업, 출연연 등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추가적 참여를 원하는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여 개방성·확장성 확보

#### 1 사업 추진체계

- 그랜드 컨소시엄 : 공모를 통해 선정
  - (자격) ICT·SW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연구책임자)과 다수의 대학 및 기관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
    - 대학 외 국내·외 ICT기업, 연구소, 지자체 등도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 가능
  - (참여인력) 국내·외 AI분야 전임 교수진, 포닥 및 석·박사과정(학생연구원) 등 전임연구원으로 참여인력을 자율적으로 구성
  - (계획서 제출) 연구목표 및 방향, 우수 연구진 확보, 인프라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작성 항목

- 세계적 수준과 경쟁할 수 있는 고위험·도전형 연구목표 및 방향
- 개별기관 단위에서 수행이 어려운 대형 협동연구 과제 수행 계획
- 컨소시엄 외 외부 참여자도 연구에 추가 참여할 수 있는 운영 개방성 확보 방안
- 국내·외 최고 수준의 우수 연구자 및 전임 연구원 확보 계획
- 연구수행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확보 방안 및 인프라 공유·개방 원칙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 및 행정지원 등 컨소시엄 운영방향

# 사례

## 5

### □ 연구책임자(주관기관 소속) : 리더십과 연구역량을 겸비한 최고 권위자

- (선정기준)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인 만큼, 허브의 운영철학을 구현할 비전과 미션을 제시하고, 그간의 연구성과 및 실적 검증 (수월성 확보)을 통해 AI분야 최고권위를 갖는 자를 선정
  - 사업 성공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평가 배점 중 연구책임자 항목 배점을 강화

#### <연구책임자 평가 기준(안)>

연구역량 우수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 간 AI분야 연구 성과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연구업적의 양(IF 상위 10% 저널논문 수, 탑 컨퍼런스 논문 수 등)</li> <li>- 우수 연구업적의 질(Google h-index, guide2research 랭킹 등)</li> <li>- 연구자의 국제 학술 지명도(국제 저널 Editor, 국제학술대회 조직 경험 등)</li> <li>- 국내·외 특허등록실적,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연구실적 등</li> </ul> </li> </ul>
리더십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 수행 경력</li> <li>• AI분야 산학연 네트워크 보유 및 학회·협회 등 활동 경험</li> <li>• AI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참여 경험</li> </ul>
허브 운영철학 구현(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브의 비전과 미션 제시 및 추진방안</li> <li>• 외부 참여자에 대한 개방성 확보 방안</li> </ul>
연구윤리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경험여부</li> <li>•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 집행 등의 사례 존재여부</li> </ul>

- (권한과 임무)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체계 구성, 연구방향 설정 (Top-down식 포함), 연구과제 기획·제안, 컨소시엄 운영 등을 추진하되, 공공성·개방성 확보를 위한 임무\* 부여

#### \*연구책임자의 주요 임무

- ① 컨소시엄 내·외부기관의 인프라(컴퓨팅파워 등) 활용·연계
- ② 자신이 속한 대학의 재원으로 인프라, 연구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③ 행정업무 지원 인력 및 조직 확보
- ④ 산학협력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우수연구자 영입, 컨소시엄의 지속가능성, 확장성 확보를 위한 대외 협력 활동 등

### □ 참여 연구진 : 우수한 연구실적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으로 구성

- 개별기관 단위에서 수행이 어려운 대형 협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최고의 연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 참여연구자의 역량을 별도 항목으로 비중있게 평가

### □ 운영위원회 : 산학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구성)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최고권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 ※ 우리부 및 전문기관(IITP)과 협의를 통해 위원 구성

#### 운영위원회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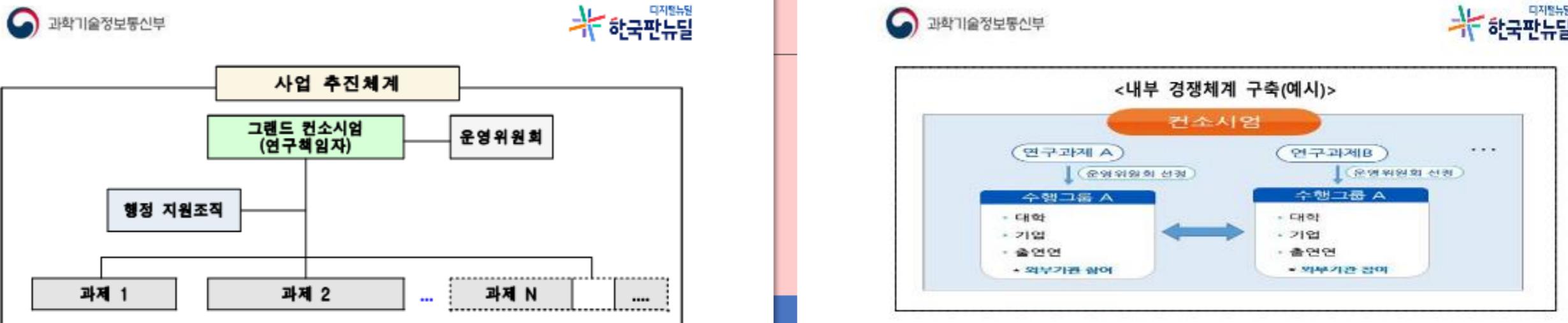
- (학계) 학회·협회 등의 대표성보다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업적의 우수성(수월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국내 AI분야 최고 석학을 선정
- (산업계) 글로벌 기업 및 국내외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추진 중인 국내 대표 기업의 AI전문가
- (연구계) AI분야 원천기술개발을 기획·추진 중인 유관기관(ETRI, IITP 등)
  - ※ 필요시, 해외 석학 및 전문가의 참여 추진

- (역할) 허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연구과제 기획, 컨소시엄의 운영과 구조개편, 허브의 기능 조정·확장, 종합 평가 등 주요사항을 심의
  - 허브 출범 준비 단계에서부터 운영위를 구성하여, 도전적 연구목표 및 연구방향 설정, 허브 운영 방향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 및 의견 제시
    - ※ 다수 산·학·연의 참여를 통해 그랜드 컨소시엄이 AI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참여기관 추가 및 변경 가능
  - 인프라 운영의 개방성 확보, 행정조직 및 예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결정
  - 허브의 운영 성과 및 실적,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적절한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견제시
- (규정마련)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운영 방식, 역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AI 혁신 허브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활용

### □ 행정 지원조직

- (운영) 주관기관의 행정조직(산학협력단) 또는 별도 법인을 활용
  - ※ 주관기관은 간접비의 60% 이상을 허브 사업에 활용토록 협약
- (역할) 연구책임자 및 운영위원회를 보좌·지원하며 사업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연계 참여 기관의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 외부기관 추가 참여 유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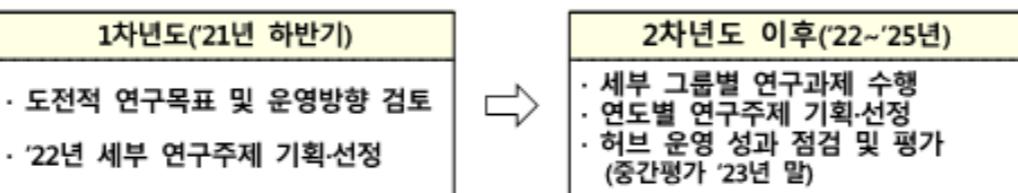
# 사례 5



## 2 사업 운영 방향

### (1) 사업 운영 계획

- (1차년도 : 기반조성) 컨소시엄과 운영위원회가 참여하여 도전적 연구 목표에 따른 세부 연구주제를 기획·검토하고,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
  - 주관·참여기관의 역할 정립, 연구 참여인력 구성, 연도별 인프라 운영 계획 수립, 물리적 공간 및 지원조직 확보 등을 추진
- (2차년도 이후 : 본격추진) 연도별 예산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 공유·확산 추진



### (2) 사업 수행 시 고려 사항

#### □ 내부 경쟁체계 구축

- 다양한 기관이 **수평적 지위**에서 참여하는 구조로, 연구과제를 **몇 개의 대형과제 위주**로 제시하고, 컨소시엄 내·외부 경쟁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외부 참여자에 대한 개방성 확보

- 전체 연구과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컨소시엄 초기 참여자 외의 추가적 참여를 원하는 기관(연구자)에게 배분하여 우수연구자 참여를 보장(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해당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허브의 개방성 및 확장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여 선정 평가 시 이를 반영

#### □ 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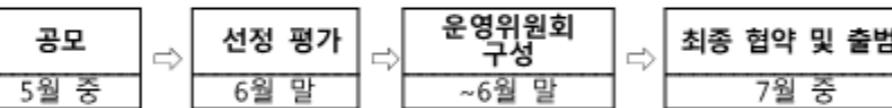
- 5년의 사업기간 중 **3년차 중간(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 여부 등을 결정
  -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허브의 운영 성과 및 실적,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적절한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검토의견 제출**

# 사례

## 5

### III. 추진 일정 및 평가기준

#### □ 사업 추진 일정(안)



#### □ 평가기준(안)

구분	세부항목	평가 기준
연구목표 및 계획 우수성 (50점)	혁신성·도전성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혁신적이고, 새로운 고난도 과제 제시</li> <li>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li> </ul>
	계획 우수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연구를 위한 대학·기업·연구소 등 참여 다양성 및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하는 대학 및 기관의 수 및 구성의 다양성</li> <li>인프라, 인재양성 등 허브 운영을 위한 계획의 우수성</li> </ul> </li> </ul>
	기대효과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설정 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li> </ul>
연구책임자 (30점)	연구역량 우수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5년 간 AI분야 연구 성과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연구업적의 양(FI 상위 10% 저널논문 수, 탑 컨퍼런스 논문 수 등)</li> <li>우수 연구업적의 질(Google h-index, guide2research 랭킹 등)</li> <li>연구자의 국제 학술 지명도(국제 저널 Editor, 국제학술대회 조직 경험 등)</li> <li>국내·외 특허등록실적, 산학연 협력/기술이전 연구실적 등</li> </ul> </li> </ul>
	리더십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 수행 경력</li> <li>AI분야 산학연 협회 참여 등 산학연 네트워크 보유</li> <li>AI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참여 경험</li> </ul>
	허브 운영철학 구현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브의 비전과 미션 제시 및 추진방안</li> <li>타 연구그룹 포용 방안</li> <li>외부 참여자에 대한 개방성 확보 방안</li> </ul>
	연구윤리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경험여부</li> <li>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 집행 등의 사례 존재여부</li> </ul>
참여연구자 (20점)	연구역량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연구자의 최근 5년 간 AI분야 연구 성과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은 연구책임자 평가 시와 동일</li> </ul> </li> <li>산·학·연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참여 여부</li> </ul>

### IV. 분야별 추진 방향

#### 1. 연구개발(R&D)

##### □ (연구대상)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원천기술 확보, 산업계 현안 해결 등을 위한 고난도·도전형 과제

- 연구 난이도, 예산 및 인력 한계, 중장기 연구기간 등으로 **개별 주체가 수행하기 어려워 협동연구가 필요한 대규모 과제** 중심

##### □ (과제선정) 연구책임자가 운영위원회 심의(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검증·리뷰 등)를 거쳐 **연구주제·규모·개수 등을 결정**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도 **연구과제 제안하고 선정 가능**
- 권위있는 **최고 전문가**에 의한 **Top-down방식**의 과제 선정도 병행

##### □ (연구수행) 3책 5공 적용제외, **총액 인건비 적용 등 지원**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시행('20.12.29)으로 본 사업과 같은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3책 5공 규정 적용을 배제 가능**

※ 타 R&D사업 재원을 본 사업 연구에 연계·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통해 적용 제외토록 적극 지원

- 국내·외 외부 전문가 유치를 위해 **인건비 비중, 연구수당(인센티브)** 등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 □ (평가)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 평가** 실시, 평가를 통한 간접 최소화

- 과제 수행의 **성공/실패**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수행과정과 내용 중심으로 우수·보통·미흡 평가**

○ **단계·중간평가 최소화** \* 5년 사업 기간 중 단계평가 1회 실시(3년 차, '23.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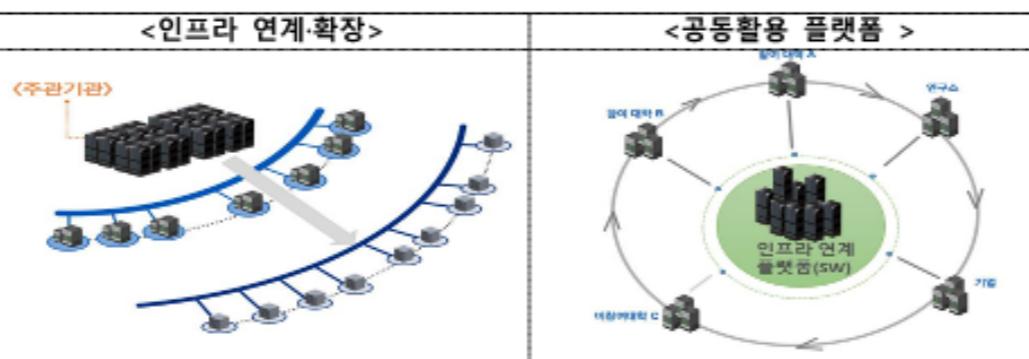
# 사례

## 5

### 2. 인프라 구축 및 활용

#### □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 확보

- **자율적인** 인프라 구축·연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 대학·연구소·기업 등 사업 참여기관이 각각 보유한 컴퓨팅 자원 **연계\*** 활용, **민간기업이** 유료로 제공하는 **컴퓨팅 자원 이용** 등
    - \* 공동 활용 플랫폼(SW)을 통해 인프라 간 연계·활용 체계 마련
  - 사업 수행기관이 자체보유 컴퓨팅 인프라 구축하는 방식도 가능
    - 이 경우, 사업 및 R&D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 등 기관도 AI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 ※ 사용 우선권 : (1순위) 허브 과제 (2순위) 주관참여기관의 타 연구과제 (3순위) 외부기관
    -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컴퓨팅 자원** 연계를 통한 **확대 노력을 지속**
      - ※ 광주 AI데이터 센터( '21~24년까지 총 88.5PF) 연계·활용 방안 등도 검토



#### □ 공간 구축

- 컴퓨팅 인프라 자체 구축 시, 설치 공간 및 환경 구축은 설치기관이 부담

### 3. 우수연구자 영입 및 양성

#### □ 리더급 연구자

- **(대학교수)** 연구과제 참여대학 소속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총괄**
  - 기존 소속기관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며 참여 또는 풀타임 참여 가능
    - ※ 최고의 연구자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개별 연구실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 및 "AI 혁신 허브"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필요
- **(산업계 전문가)** 교원 겸직, 산학협력 연구 등을 통한 적극적 영입 추진
  - 사업 주관 및 참여대학은 **교원 겸직 허용 조항**(지능정보화기본법 제25조 개정, '20.12.10 시행)을 **학칙에 필수 반영**

#### □ 전담 연구원 : 국내 AI 연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양성

- **포닥**(비전임교원 포함) 및 **박사 과정생**(학생연구원) 중 선발하여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 기존의 개별 기관 소속으로 참여 또는 허브 소속으로 전담 참여 가능
- 연구비 외 **인센티브를 지급**(간접비 내 연구능률성과급 등 활용)하여 **안정적 환경**에서 **연구 경험을 축적, 성장**하도록 지원
- 박사과정 중인 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에 대해서는 **소속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연구분야 확장과 경로 개척을 위한 **소규모 연구과제**도 별도 지원하여 연구책임자로서 **독자적 연구과제 수행 기회** 부여
- 전담 연구원 외 석·박사 학생 대상 **공동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대학이 구심점이 되어 운영하고, 사업 비참여대학에도 참여 및 활용 개방

# 사례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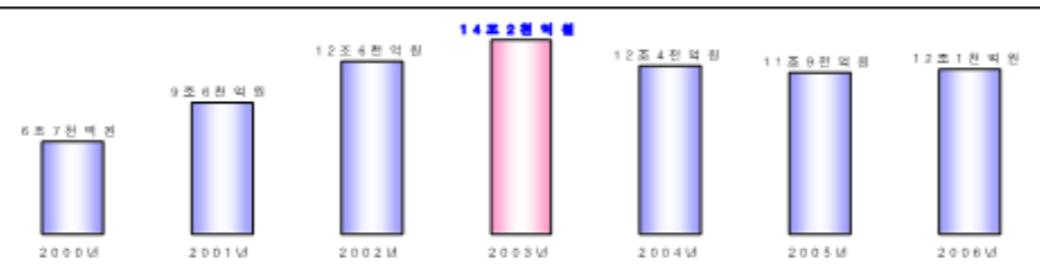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1. 추진 배경

- 지난해 사회 문제화된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가 정부 집중 단속으로 척결되었다고는 하나, 도박산업의 폭발성은 예측 불가 (잠복상태)
- 경마·경륜·복권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는 12.1조원으로 최근 정체·감소하고 있지만 사행산업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

※ 불법 도박사업 포함 시 매출액 규모는 29조~43조원 추정 ('06.9월,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 연도별 추이 >



※ '03년도 성장 배경 : 로또발행('02.12), 경정시행('02.6),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개장('03.3) 등에 기인

- 사행산업의 전문화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법 제정·공포 ('07.1.26, '07.7.27부터 시행 예정)

-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 시행에 대비 관계부처 T/F 구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확산 억제 및 사행성 심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본격적 논의·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 2.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 사행산업 현황 □ 별첨1 : 사행산업 현황

- 사행산업은 '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매출 규모 또는 고객 실지 출액이 최대 4~5배 증가 (이용 고객은 2.4배 증가)
  - '06년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12.1조원으로 GDP(848조원) 대비 1.4% 수준

※ 사행산업 규모 '98년(3.3조) → '03년(14.2조) → '06년(12.1조)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 사행산업 확산 주요 원인

- 정부부처는 조세수입 확충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사행산업 확산 정책 추진
  - '98년 이후 강원랜드('00.10), 스포츠 토토('01.10), 경정('02.6), 로또 ('02.12) 도입 ('98년 이전 : 경마, 경륜, 복권만으로 유지)
-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사행산업을 적극 유치
  - 부산 경마장('04.9) 및 경륜장('05년), 창원 경륜장 개장('06) 및 장외 매장 유치

※ 현재 대전, 전주, 부평(경륜장) / 인천, 의왕(경정장) 유치 추진 중

- 사행업종간 경쟁 격화로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 배팅 도입, 경기일수·횟수 연장, 새로운 배팅 방식 도입 등 사행성 조장 심화
  - 별첨2 : 사행산업 업종별 운영 실태

### □ 주요 문제점

- 사행산업 업종별 근거법률이 다양하고,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인 조정·규제가 미흡
  - 별첨3 : 사행산업 소관 및 시행기관
- 도박중독율이 6.5% 내외로 선진국 5%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정부 차원의 중독자 예방·치료(재활) 대책은 미흡한 실정
  - 별첨4 :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센터 운영 실태
  - 중독 예방·치료를 위하여 사행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별첨5 : 수익금 운용 실태
- 불법 사설경마(3조4천억 규모, '04년 형사정책연구원 추정), 경마장 등 주변 불법 수표 환전, 카지노 주변 전당사 난립 등 부작용 상당
- 경마, 경륜 등의 온라인·전화·모바일 배팅 허용으로 사행심 조장
  - ※ 현재 경마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급증 예상 (홍콩 : 52.5%, 일본 43.4% 차지)
- 매출 위주의 사행업체 기관 평가로 매출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부작용을 심화시키는데 한몫

# 사례

## 6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3. 향후 정책방향

#### 1)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 안전하고 책임있는 켐블링 (Safe & Responsible Gaming)

정책  
방향

####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 도모

추진  
전략

##### 1. 건전 레저산업으로 발전 기반조성

-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성 · 운영
- ② 건전발전종합계획 수립 · 시행
- ③ 사행산업 기금 및 기관 평가제도 개선
- ④ 사행산업 이용실태 정기조사
- ⑤ 사행행위 점검 · 단속 정례화 및 고발신고센터 운영

##### 2.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 ① 업종간 통합 · 총량 조정 시행
- ② 사행산업 허가제도 개선
- ③ 신규 베팅수단 · 방법 등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 ④ 사행산업 광고 규제 엄격화
- ⑤ 신규 사행산업 진입 업계 규제

##### 3. 중독자 예방 및 치유 활성화

- ① 과도한 베팅방지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② 도박중독 예방 · 치유센터 설립
- ③ 도박중독 예방 · 치유 활동 재원 마련
- ④ 중독자 예방 · 치유를 위한 민간전문활동 적극 지원
- ⑤ 24시간 상담체계 (Help-Line) 구축
- ⑥ 대국민 인식전환 · 홍보 · 교육 강화

- 5 -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2) 정책추진 방향

- ◇ 현시점에서의 사행산업 및 입장의 신설이나 확산은 전면 중단
- ◇ 향후,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 감독 등의 규제업무는 신설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강력히 시행

#### □ 건전 레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성 · 운영(7월27일)
  - 위원회에서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 사행산업 기금관리 및 평가개선
  - 기금은 도박중독 예방 ·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한 레저산업 육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
  - 사업자 기관평가 시에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노력 등 “사행산업 건전화” 실적을 병행하여 평가토록 제도개선
- 사행산업 이용실태 정기조사 (격년)
  - 조사결과를 도박중독 예방 · 치유 등 부작용 최소화에 활용

- 사행산업 단속의 정례화 및 「사행행위 고발신고센터」 운영
  - 통합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사행산업 점검 주기적 실시
  - 통합감독위원회 내에 전담신고센터 설치 · 운영
  - 신고포상금제 도입 · 운영 (예산 반영 추진)

#### □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 사행산업 총량조정 시행
  - 통합감독위에서 사행산업 전반 및 업종별 총량조정 기준을 마련
    - ※ 총량조정 기준은 업종별 특성, 도박중독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GDP대비 일정비율 이하, 전국 및 시 · 도 본장 · 장외매장 수 등으로 설정(시행령 반영)
  - 사행산업의 총량조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시행
    - ※ 1단계: 베팅한도 규제수단 마련, 경기일수 및 횟수 조정, 장외발매소 구조조정
    - 2단계: 1단계 효과분석 후 미흡 시 업종별 연차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6 -

# 사례

## 6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 사행산업 허가제도 개선

- 진입규제 조항(설치절차, 시설기준, 운영기준, 허가유효기간 등) 및 퇴출 조항(영업정지, 폐쇄 등 위반 요건) 신설

### ○ 새로운 유형의 사행산업 엄격 금지 (투견, 새로운 배팅수단 등)

### ○ 사행산업에 대한 광고 등의 엄격 규제

- 사행성 유발소지가 큰 광고는 매체 제한 시행 (당첨금 예시 등)
- 청소년 접근이 쉬운 매체(TV, 옥외광고 등)를 통한 광고제한

### □ 도박중독 예방·치유기능 활성화

#### ○ 베팅한도 제한을 통한 중독차단 방안 마련

- 경마·경륜·경정에 비실명 계좌권 도입을 추진하고, ID카드제(실명) 도입은 비실명 계좌권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 추진을 검토 (특성상 복권류는 제외)

※ 비실명계좌권 : 이용객에게 계좌번호가 있는 비실명카드를 발급, 투표권 구입시 이를 제시도록 하여 구매한도액을 준수토록 하는 제도

#### ○ 통합감독위원회 내에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설치·운영

#####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Social Awareness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전예방)
- 도박중독자를 위한 사회적 간생프로그램 개발, 시행(사후관리)
- 사행산업 종사자의 의무적인 예방 교육 방안 강구

##### - 업종별 중독센터, 외부 민간전문기관, 병원과 연계 운영

##### - 24시간 상담체계(Help-Line) 구축·운영 등

##### - ID카드 도입시 중독자 치료비 지원제도와 연계 운영

####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재원확보

- 사행산업 사업자 수입의 일정액(2/100의 범위 내)을 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경비로 활용(시행령 반영)

#### ○ 단도박모임 등 민간 전문활동 적극 지원

#### ○ 사행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홍보·교육 강화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별첨1】

### 사행산업 현황

“사행산업”이란 우연(베팅 등)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을 의미

#### ○ 사행산업의 영업장 수는 복권류소 제외 총 88개소이고, '06년도 국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2조원으로 GDP(848조원) 대비 1.4% 수준

#### ○ 이용 고객의 실제 총 지출액(총 베팅액-고객환급금)은 약 5조원

조세·기금이 3.3조원(63.9%), 수익금 1.8조원(36.1%) 차지

※ 환급율 : 경마 72%, 경륜·경정 70%, 카지노 82~83%, 복권 50~65%

#### ○ 총 이용고객은 복권을 제외하고 연간 약 3천만명이며, 도박경험율은 67%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미국 75%, 호주 80%)

- 1인당 평균 베팅액은 경마 23만원, 경륜 28만원, 경정 20만원, 카지노 295만원

※ 사행산업 이용객 1인당 연간 약 60만원 베팅, 17만원 지출

(06년 기준)

구분	합계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매출규모	12.1조원	5.3조원	1.6조원	0.4조원	1.3조원 (강원랜드 0.8조원)	3.5조원
실고객지출액	5.1조원	1.48조원	0.48조원	0.12조원	"	1.71조원
이용객수	2,985만명	1,945만명	565만명	197만명	278만명 (강원랜드 179)	-
1인당 평균베팅액	-	22.8만원	28.1만원	20.1만원	295만원 (강원랜드)	-
영업장수	-	36 (장외매장 33)	22개소 (장외매장 19)	13개소 (장외매장 12)	17개소 (외국인전용 16개소)	복권(18,887개소) 스포츠토토(6,688개소)
조세/기금 (억원)	18,508/14,065	10,610/675	2,861/95	714억 원/0	1,813/1,931	2,510/11,364
비고 (04년 기준)	-	세계 7위 3조3,340억엔(日)	9,370억엔(日)	1조20억엔(日)	영국 1.26조 원 호주 2.45조 원 마카오 5.26조 원	세계 10위권 호주 2.9조 원 대만 2.2조 원

※ 자료출처 : 소관부처 제출자료 종합

※ 카지노의 경우 매출규모는 베팅액에서 고객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산정

(경마 등 타 사행산업과 같은 방식으로 매출규모를 추산할 경우 약8조원)

# 사례

## 6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별첨2】

#### 사행산업 업종별 운영실태

##### 경마

- 매장은 36개소(장외지점 포함), '06년도 매출액은 5조3천억원

(단위: 억원, 천명)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경마장 수 (장외지점 수)	2 (20)	2 (22)	2 (25)	2 (24)	2 (28)	2 (27)	2 (29)	3 (32)	3 (33)
매출액	전체 (증감) 29,500 (-)	34,200 (15.9)	46,229 (35.2)	60,163 (30.1)	76,491 (27.1)	61,731 (△19.3)	53,303 (△13.7)	51,548 (△3.3)	53,110 (3.0)
	장외지점 (비중) 17,783 (60%)	21,045 (61.5%)	30,552 (66%)	40,779 (66.7%)	52,293 (68.3%)	41,706 (67.5%)	35,745 (67%)	35,229 (68.3%)	37,113 (69.9%)
실 고객지출액 (매출액-환급금 72%)	8,260	9,576	12,944	16,846	21,417	17,285	14,925	14,433	14,760
입장 인원	전체 (증감) 9,856 (-)	9,958 (1.0)	11,955 (20.1)	13,366 (11.8)	16,280 (21.8)	16,751 (2.9)	15,407 (△8.0)	16,185 (5.0)	19,448 (20.1)
	장외지점 (비중) 6,551 (66.5%)	7,023 (70.5%)	8,746 (73.2%)	10,140 (75.9%)	13,076 (80.3%)	13,565 (81%)	12,069 (78.3%)	12,917 (79.8%)	15,830 (81.4%)

※ 자료출처 : 소관부처 제출자료 종합

※ 경마 개최일수 연간 105일 이내, 1일 경주횟수 15회 이내, 승자투표방법 8종

※ 매출액은 '02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급증하였으나, '03년 이후 하락세

※ 연간 실 방문고객은 70만명, 1인당 연지출액은 약 210만원(1인당 연 23회 출입)

- 1인 1경주당 마권구매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마사회 내부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장외발매소는 수도권 위주로 전철역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 경기관람 보다는 베팅위주로 진행되어 중독자 양산 우려
  - 장외지점이 전체 매출액의 70% 차지(입장객 80%)
  - ※ 경마 장외발매소에서의 별적도박자 비율(48%)이 경마 본장에서의 비율(24%)보다 2배 높게 나타남('06.1월,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연구」)
  - 대형화로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
  - ※ 수용인원 : 영등포지점 9천명, 분당지점 6천명, 창동지점 5천명 등
- 온라인·전화·모바일 베팅도 사행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 ※ 현재 경마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급증 가능성(홍콩 52.5%, 일본 43.4% 내외 차지)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기업이미지 광고라는 명목으로 TV·신문·지하철·옥외 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사회 및 경마에 대한 광고를 실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세수입이 집중되어 있고(82%),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의 성행도 문제

(04년도 사설경마 매출액 3조4천억원, 형사정책연구원 추정)

※ 사설경마는 경마장·장외발매소 주변에서 스크린을 통해 실제 경마를 보는 것처럼 하여 경마베팅을 하는 것. 세금 등이 없어 환급율이 높고, 베팅액 제한도 없음

※ 최근에는 마사회가 인터넷 베팅 참여자를 위해 홈페이지([www.kra.co.kr](http://www.kra.co.kr))를 통해 경마를 실황 중계함으로써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 경륜·경정

- 경륜·경정의 매장은 35개소(장외매장 포함), '06년도 매출액은 약 2조원

(단위: 억원, 천명)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본장 (장외지점 수)	1(3)/ 경륜 2(11) 경정	1(8) - -	2(11) - -	2(12) - -	2(13) 1(0) -	3(14) 1(4) -	3(14) 1(7) -	3(17) 1(11) -	3(19) 1(12) -
매출액	전체 (증감) 3,384 (-)	5,956 (76.0)	12,308 (106.6)	20,782 (68.8)	29,999 (44.4)	24,107 (△19.6)	19,427 (△19.4)	17,555 (△9.6)	15,895 (△9.5)
	경정 -	- -	- -	- -	1,223 (-)	3,266 (167.0)	3,378 (3.4)	4,127 (22.2)	3,972 (△3.7)
	장외매출 (비중, %) 711 (21.0)	3,164 (53.1)	8,349 (67.8)	12,244 (58.9)	16,513 (55)	13,567 (56.2)	10,725 (55.2)	9,537 (54.3)	11,129 (70.0)
실제 지출액 (매출액-환급금 70%)	경륜 -	1,015 -	1,787 -	3,692 -	6,235 -	9,000 -	7,232 367	5,828 980	5,266 1,013
	경정 -	- -	- -	- -	- -	- -	1,217 1,735 (53.1)	1,238 2,218 (65.7)	1,192 3,203 (77.6)
입장 인원	전체 (증감) 2,105 (-)	3,408 (61.9)	3,576 (4.9)	4,799 (34.2)	5,520 (15.0)	5,651 (2.4)	5,562 (△1.6)	5,455 (△1.9)	5,648 (3.5)
	경정 -	- -	- -	- -	452 (-)	1,217 (169.2)	1,434 (17.8)	1,909 (33.1)	1,968 (3.1)
	장외매출 (비중, %) 404 (19.2)	1,447 (42.5)	2,202 (62.1)	2,560 (63)	3,212 (58.1)	3,435 (6.7)	3,447 (62)	3,455 (63.3)	4,193 (74.2)
	경정 -	- -	- -	- -	- -	744 (61.1)	1,058 (73.8)	1,602 (83.9)	1,752 (89.0)

※ 자료출처 : 소관부처 제출자료 종합

※ 경륜·경정 1일 경주횟수 15회 이내, 승자투표방법 5종, 1인당 1회 베팅한도액 10만원

※ 경륜 매출액은 '98년 이후 '02년까지 8.5배 증가 이후 감소세

경정 매출액은 '02년 실시 이후 3.4배 가량 증가

※ 연간 실출입고객은 경륜 37만명(1인당 연간 15회 방문), 경정 7만명(1인당 연간 26회 방문), 1인당 연간 실지출액은 경륜 약 130만원, 경정 170만원

# 사례

## 6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동일 발매창구에서의 구매 상한선 준수상태는 양호한 반면, 고객이 여러 창구를 옮겨 다니거나 또는 자동발매기에서 계속적으로 10만원을 초과 구매하는 것은 통제 곤란**
- **장외매장은 서민 생활권과 근접하여 서민층 중독자를 양산, 대형화·과밀화되어 관리가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는 등 문제소지**
  - **장외매장의 매출액이 전체의 70-80% 차지**  
(입장객도 경정의 경우 90% 차지)
  - 특히 **평일(수·목)**의 경정 실시 이후(02년) 장외발매소를 통한 주 5일 베팅이 가능해져 중독자 양산 가능성 증대

※ 일본은 본장과 비슷한 수의 장외매장, 우리는 6-12배에 달하는 장외지점 운영

### < 경륜·경정 한·일 비교 >

	경륜		경정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근거법	경륜경정법	자전거경기법	경륜경정법	모터보트경주법
시행자	공단, 지자체	지자체	공단, 지자체	지자체
주무부처	문화부	경제산업성	문화부	국토교통성
시행연도	1994년	1945년	2002년	1952년
1일 경기횟수	15회 이내	10~12회	15회 이내	11~12회
경주장수	3개소	47개소	1개소	24개소
장외매장수	19개소	47개소	12개소	21개소

- **온라인베팅 등으로 인한 사행성 심화 우려(전체 매출액의 1.3% 내외)**

※ 인터넷 베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사행성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 여론을 감안하여 '07.2.26부터 중단 상태
- TV·신문·라디오·지하철·옥외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경륜·경정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여 사행성 조장**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카지노

- 영업장은 17개소(내국인 1개소), **실 매출액은 약 1조3천억원**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8천억원)

(단위:억원, 천명)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카지노장 수	13(외국인)/1(내국인)								16(외국인)/1(내국인)
총 드롭액	전체 (증감율)	3,410 (4.3)	3,555 (74.8)	6,215 (548)	40,294 (3.6)	41,761 (39.8)	58,394 (13.5)	66,254 (9.2)	72,338 (12.4)
	강원랜드 (비중)	-	-	2,777 (44.7)	18,377 (45.6)	21,840 (52.3)	37,530 (64.2)	43,311 (65.4)	47,537 (65.7)
실 고객지출액 (베팅액-지급액)	전체 (증감율)	2,852 (5)	2,995 (57.2)	4,710 (77.4)	8,357 (5.0)	8,778 (20.1)	10,546 (11.0)	11,704 (6.3)	12,449 (3.0)
	강원랜드 (비중,%)	-	-	884 (18.8)	4,532 (54.2)	4,685 (53.3)	6,561 (62.2)	7,368 (63.0)	8,102 (65)
입장인원	전체 (증감율)	689 (0.9)	695 (21.6)	845 (80.6)	1,526 (2.6)	1,566 (39.1)	2,178 (13.0)	2,461 (△0.7)	2,782 (13.3)
	강원랜드 (비중,%)	-	-	209 (24.7)	900 (60.0)	919 (58.7)	1,548 (71)	1,785 (72.5)	1,880 (77)

※ 자료출처 : 소관부처 제출자료 종합

※ 강원랜드는 출입일수 제한(월 20일), 휴장시간 제한(06:00~10:00), 베팅액 제한(일반 30만원, VIP 1천만원) 등의 규제장치 마련, 시행

※ 강원랜드 실 이용객수는 약 34만명

1인당 연간 약 5.5회 방문, 개인당 연간 약 240만원 가량 지출

- 카지노는 게임진행의 특성상 참여자의 소비금액이 타 사행산업에 비해 높아 가사탕진의 큰 요인으로 작용
- **베팅액 한도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등을 감독하고 있으나 적발에 어려움**
  -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매출액 누락과 내국인의 출입 사례도 은밀히 잔존, 적발된 사례 발생

※ 제주프라자카지노('04.6), 제주칼카지노('04.11) 등 내국인 출입 적발  
※ 제주하얏트호텔 카지노 매출액 누락('02-'03년도 65억원)
- 강원랜드카지노 주변에 전당사 난립(50개소 내외) 및 영업장내 사체 업자들의 불법영업 등 도박을 부추기고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

# 사례

## 6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복권 · 체육진흥투표권

- 복권류의 연간 매출액은 약 3조5천억원(일반복권 2조6천억원)

- 환급금 제외 시에는 약 1조7천억원

(단위:억원, 천명)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판매점 수	복권			4,151	4,057	8,307	8,021(로또)/ 3만개소(인쇄))	7,552(로또)/ 11,000(인쇄)
	체육진흥 투표권		2,995	1,890	2,621	4,286	4,950	6,698
매출액 (증감률)	복권	4,217 (-)	5,073 (20.3%)	7,112 (40.2%)	9,796 (37.7%)	42,342 (332.2%)	34,595 (△18.3%)	28,438 (△17.8%)
	체육진흥 투표권		28 (-)	239 (753%)	283 (18.4%)	1,389 (390%)	4,573 (230%)	9,131 (99.7%)
실 고객지출액 (매출액-환급금)			3,532	5,073	21,171	17,305	14,180	12,836
			14	110	141	694	2,285	4,316

\* 자료출처 : 소관부처 제출자료 종합

\* 복권매출액은 '99년 4,217억원에서 로또발행으로 '03년 4조 2,342억원으로 9배 이상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

\*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은 '01년 발행 당시 28억원에서 '06년 9,131억원으로 급증

### 최근, 전자복권의 도입에 따른 사행성 심화 우려

- 「인생역전」 등 **도심의 대형스크린** 등을 통한 1등 당첨금 현황의 실시간 광고에 따른 **대박환상의 사행심 조장**
- 체육진흥투표권** 운영위탁자(오리온그룹)의 손실보전 명목으로 발행 회차 한도를 크게 늘리고(300회→1,000회), 프로토 등 새로운 상품 개발로 매출이 급증하는 등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 수익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따른 소매점 급증 ('02년 2,621개소 → '06년 6,698개소)
  - 인기 종목 위주의 발행으로 비인기 종목에 대한 배려 미흡 및 도입 취지 훼손
- 회차당 1인 구매한도가 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분산 구매, 판매자의 인식 부족으로 **구매한도 초과 통제곤란**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별첨3】

### 사행산업 소관 및 시행기관

구 분	소관 부처	사업시행기관	근거 법률
카지노업 (강원랜드)	문화관광부	민간사업자 및 (주)강원랜드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경 룰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창원 경륜공단	경륜 · 경정법
경 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 투표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법
경 마	농 림 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복 권	복권위원회	-	복권및복권기본법

# 사례

## 6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별첨4】

####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 운영실태

- o **도박 중독율**은 성인의 6.5% 내외로 다른 선진국 4~5% 수준(캐나다 2.6%, 호주 4.9%, 홍콩 5.4%)에 비해 높은 상황
  - ※ 경마이용자의 34%, 강원랜드 이용자의 40%, 경륜이용자의 49%가 문제성 또는 병적 도박자로 추산('04.12. 한국마사회)
  - ※ 강원랜드 도박중독센터 상담현황 분석결과, 도박으로 1억원 이상 탐진한 중독자가 44%(상담자 2,694명 중 1,198명)에 달하고, 중독자 중 자영업자(39%)나 무직자(24%)의 비율이 높음
- o 도박중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으며, 사행산업 주체별로 **도박 중독 예방·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나 지극히 형식적
  - 관계법률에 중독 예방·치료센터 운영 등 부작용을 치유하거나 이용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없는 실정

#### < 도박 중독 예방·치료센터 운영 현황 >

업종별	운영개소	개소시점	인원	예산(단위:백만원)	연간실적(명)
경마 (유캔센터)	분당	2003.9	7	'04 456	'04 1,159
	용산		3	'05 612	'05 1,581
	지방 5개소	2006.7	15	'06 817	'06 2,158
강원랜드 (한국도박 중독센터)	정선	2001.9	8	'05 1,320	'05 2,098
	서울	2004.7	6	'06 1,900	'06 2,910
경륜·경정 클리닉	본점(잠실)	2003.7	7	'05 1,366	'05 3,735
	지방 8개소	-	각 1명	'06 1,426	'06 4,496

※ 자료출처 : 소관부처 제출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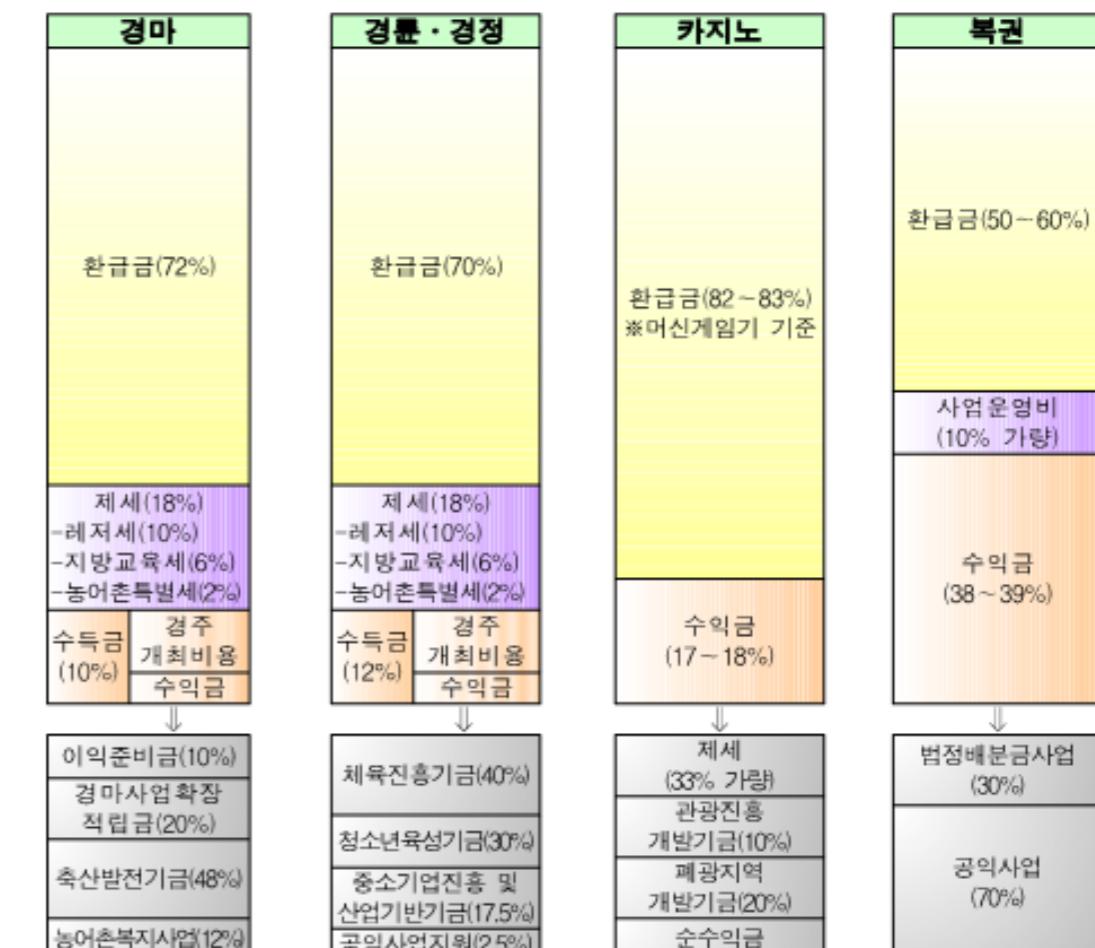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별첨5】

#### 수익금 운용실태

- o 사행산업별로 50~80%대의 고객환급금 및 제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해당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등으로 적립
  - 사행산업별 근거 법률에 따라 축산발전기금 등 6개 기금 및 지방 재정지원, 공익사업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

#### <사행산업 매출액 지출 구조>



※ 자료출처 : 소관부처 제출자료 종합

# 사례

## 6

('07.7.1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교육문화비서관실)

-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제세금이 18%**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호주 3%, 영국 2%, 미국 2%, 일본 10%)
- 사행산업의 기금 및 조세 수입은 3조 4천억원**(05년, 국세·지방세 1조 7천억원, 기금 1조 7천억원 등) 규모이며, **전체 조세대비 비중은 '99년 0.4%에서 '05년 2%로 빠르게 증가 추세**(05년, 조세연구원)

(단위 : 억원)

년도	조세			기금	기타	재정수입계
	국세	지방세	소계			
1999	3,348	4,435	7,783	2,225	505	23,044
2000	3,348	4,435	7,783	2,225	202	10,210
2001	4,849	12,752	17,601	4,938	505	23,044
2002	5,810	17,009	22,819	6,557	567	29,943
2003	7,179	13,865	21,044	18,394	628	40,066
2004	6,331	11,882	18,213	16,334	385	34,932
2005	5,898	11,128	17,026	16,877	264	34,167
연평균증가율	12%	20.2%	16.9%	50%	5.5%	27.3%

자료출처 : 조세연구원

- 특히, 조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17%이나, 기금은 50%성장세 기록

- 기금별 사행산업 수익금에의 의존율이 50~60%대**에 달하는 등 사행 산업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은 실정
  - 청소년육성기금은 67%, 관광진흥개발기금은 44%'(05년도)

(단위 : 억원)

	2004			2005		
	전체수입(A)	사행산업 수입(B)	비율(B/A)	전체수입(A)	사행산업 수입(B)	비율(B/A)
축산발전기금	1,933	1,128	58.3	1409	816	57.9
국민체육진흥기금	2,661	1,319	49.6	2,364	1,381	58.4
청소년육성기금	720	582	80.8	523	348	66.5
관광진흥개발기금	1,932	1,013	52.4	2,526	1,111	44.0
문화예술진흥기금	853	446	52.3	898	498	55.5
<b>합계</b>	<b>8,099</b>	<b>4,488</b>	<b>58.7</b>	<b>7,720</b>	<b>4,154</b>	<b>56.5</b>

자료출처 : 소관부처 제출자료 종합

- 그러나,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증독 등 사회적 부작용 치유에 사용 되는 기금조성은 전무**

# 사례 자료 출처

파일명을 클릭하면 원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1.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 교육부 (2019.1.)

사례2.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2021년 시행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

사례3.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 - 해양수산부 (2022.3.)

사례4. 산업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캐릭터(Character) 산업 육성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2018.11.)

사례5. 인공지능 혁신 허브 추진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5.)

사례6.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2007.7.)



# 과제 안내

이번 클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과제입니다. 열심히 해보아요!

## 첨부자료를 읽고 기획보고서 요약 작성하기

과제 1



보도자료『해수부-환경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와 신문기사『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 불가피』를 읽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기획보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 첨부자료를 읽고 핵심을 찾아 요약하기

과제 2



보도자료『한국, 연평균 저출산 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를 읽고  
‘제목’, ‘현황’, ‘문제점’, ‘대응방안’의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보고서, 모두가 잘 쓸 수 있어! 공무원 글쓰기 아카데미

# 다음 시간에 만나요!

기획보고서

